

현안분석 2007-

비교법제 연구 07-02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동훈 · 김봉철 · 박찬호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The legal issues on the Korea-EU FTA

연구자 : 김동훈(한국외국어대)
Kim, Dong-Hoon
김봉철(영국 런던대)
Kim, Bong-Chul
박찬호(부연구위원)
Park, Chan-Ho

국문 요약

최근 지역무역협정(RTA)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경제법에서 새로운 규범적 틀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크게 확산되었다.

한국은 EU에게 비유럽국가 중 네 번째 규모의 무역상대국이며, EU는 한국의 가장 큰 수출상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투자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큰 장점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한 투자주체인 EU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과 EU는 이미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시켰다.

EU가 체결한 다양한 양자간 협정은 많은 경우 '제휴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본질은 FTA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경제 및 무역에 관해서 EU가 취하는 수준과 동일한 정책과 규범을 요구한다. 제휴협정은 상품무역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노동, 문화 등의 분야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 협정들은 농산물, 석유류와 같이 EU에 수출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공하거나 EU로의 인력이동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EU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코토누 협정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의 76개국과 EU가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 없이 미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체결된 협정도 있다. 예를 들면, EU는 NA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양자간 제휴협정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이유가 동시에 협정체결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EU의 지중해 제휴계획에 따라, 북아프리카

및 중동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은, 그동안 EU의 기득권이 유지되었던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EU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는 이러한 정책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2006년에는 두 개의 새로운 FTA(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발효된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과 ASEAN 국가들이 상품무역분야에서 FT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획기적인 한-미 FTA도 체결되었다.

2007년 4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5월부터는 양자간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EU는 2008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한-미 FTA를 뛰어넘어 한국에게 가장 큰 자유무역체계가 조성될 것이다. 한국과 EU는 이러한 FTA를 통해서 양자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무역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애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더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FTA 정책의 추진에 따라 국내법의 개정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EU FTA는 새로운 종류의 법적 문제점들을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와 개성공업지구는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EU FTA와 관련하여, 여전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FTA 정책과 규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Regional Trade Agreement(RTA) or Free Trade Agreement(FTA) recently became new paradigm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vast majority of WTO members are party to one or more RTAs. The surge in RTAs has continued unabated since the early 1990s until now.

Korea remains the EU's fourth largest non-European trade partner while the EU has become one of Korea's largest exports destination. Korea is both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well located for constituting a bridge for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and this is considered a priority by its leaders. 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investor to Korea, the EU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is process. The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signed by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on one side, and Korea, on the other, has been in force since 1 April 2001.

Many EU bilateral treaties are dubbed "partnership agreements." In essence, their basic concepts are FTAs. The main thrust is to get each country they sign with to adopt the same laws and policies relevant to business and trade as the EU itself. The agreements cover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investment, services, culture, etc. They provide special tariff reductions for exports to the EU, such as agricultural goods and textiles, and special provisions on migration of people to the EU.

Many of the agreements are driven by a desire to keep control of former European colonies. For example, the Cotonou Agreement binds the EU to 76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It is the EU's prime instrument to retain privileged relations with the former colonies. Others

are driven by direct competition with the US and no historical ties. For example, the EU proposed to Mexico a bilateral agreement just after NAFTA was signed. Yet others mix the two motives. The Mediterrean partnership programme is both a means of drawing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into a very tight relation with the EU and a direct leverage against US influence in the EU's backyard.

Korea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FTAs in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everal ambitious FTA policies since then. The Korea-Chile FTA in 2002 became the first fruit of this FTA policy. Two more FTAs (the Korea-Singapore FTA and the Korea-EFTA FTA) had effect in 2006. Korea and the ASEAN counties started to apply their FTA on the field of trade of goods in 2007. Futhermore, Korea has reached a landmark FTA with the US.

On 23 April 2007, the EU Council authorized the Commission to start negotiating an FTA with Korea and they launched negotiations of a bilateral FTA in May of that year. They expect to complete the deal in 2008. If it is successful, an EU free trade deal will be Korea's biggest, exceeding that with the US. Korea and the EU expect to promote bilateral trade through the prospective FTA, notwithstanding ongoing expert level cooperation in order to remove existing and prevent new trade barrier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requirements to products or services 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have been already some partial amendments of Korean national laws regarding the FTA policies. Moreover, several new acts have established for the policies. However, the Korea-EU FTA will produce new kinds of legal problems. For example, Investor-State Dispute and

Kaesung Industrial Complex have many legal points to solve. A long term view is still needed for both the Korean FTA policy and legal infrastructure which is related to the Korea-EU FTA.

Key Words : FTA, RTA, WTO, GATT, Korean FTAs, EU, Korea-EU FTA, Cotonou Agreement, Partnership Agreement, Investor-State Dispute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15
제 2 장 한국과 EU	17
제1절 EU 개관	17
1. EU의 성립과정	17
2. EU의 현재	20
3. EU의 법적 성격과 무역관련 법규의 특징	22
제 2 절 한국과 EU의 무역	23
1. 한-EU 무역구조	24
2. EU의 산업구조와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	25
3. 주요 통상문제	27
제 3 장 FTA에 대한 일반적 분석	37
제 1 절 FTA	37
1. FTA의 의의	37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39
3. FTA의 유형	40
4. FTA의 국내법적 효력	42

제 2 절 FTA의 경제적 효과	44
1. 긍정적 효과	44
2. 부정적 효과	46
제 3 절 FTA의 규범적 기능	47
1. WTO 규범과의 병존적 기능	47
2. FTA의 유형에 따른 규범적 기능	49
3. 무역 경제관련 법적 기반	50
제 4 절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52
1. GATT 제24조	52
2.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55
3. 허용조항	57
4. GATS 제5조	57
제 5 절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59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성립과 기능	59
2.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와 견해의 대립	60
3.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62
제 4 장 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63
제 1 절 EU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63
1. EU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와 절차	63
2. EU의 지역무역협정 정책과 체결된 주요 협정들	65
제 2 절 EU 지역무역협정의 분석	67
1. 유럽국가들과의 협정	67
2.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의 협정	70
3. 관세동맹	74
4. 코토누 협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FTA	75
5. 중남미 지역국가들과의 협정	83
6. 기타 지역들과의 협력	97

제 3 절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새로운 FTA 정책	100
1.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100
2. 아시아 국가와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추진	105
제 5 장 한-EU FTA의 추진	107
제 1 절 한국의 FTA 정책과 체결된 FTA	107
1. FTA 정책의 추진	107
2. 한-칠레 FTA	109
3. 한-싱가포르 FTA	114
4. 한-EFTA FTA	119
5. 한-ASEAN 상품무역분야 FTA	125
6. 한-미 FTA	132
제 2 절 한-EU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협력협정	142
1. 양자간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44
2. 통관에 관한 상호 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협정	144
제 3 절 한-EU FTA	145
1. 한-EU FTA의 추진배경	145
2. 협상의 준비와 경과	147
3. 분야별 현안	148
제 6 장 한-EU FTA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향	151
제 1 절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조치	151
1. FTA에 관련된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	151
2. 한국 FTA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	153
3. 한-EU FTA의 무역구제조치 규정에 대한 영향	160
4.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 관련 국내규범	161
5. 한-EU FTA 등 FTA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규범의 개편방안	163

제 2 절 금융과 투자 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166
1. 금융 및 투자 분야의 법적문제 발생의 가능성	166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167
3.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및 투자규정의 구성	168
4. 한국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규정	169
5. 문제발생의 위험성과 한-EU FTA에 대한 영향	173
6.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대응책	174
제 3 절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파생되는 법적 문제점	175
1. 문제점의 인식	175
2. 한국의 FTA에 나타난 개성공업지구 관세혜택 규정의 내용	178
3.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관련 규정	180
4. 개성공업지구 노동력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4
제 4 절 국내의 규범체계의 정립에 따른 FTA 추진	189
1. FTA 정책의 추진과 법률의 제정 필요성	189
2. ‘통상절차법안’의 마련	191
3. 피해최소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규범	193
4. 주변국들과 무역 관련 규범들의 조화 필요성	196
제 7 장 결론 및 요약	199
참고문헌	201
부 록	209
EU의 지역무역협정 본문의 구성	213
관련 국내법률	271

제 1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까지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이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WTO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부터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이른바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WTO체제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규범인 까닭에 구체적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체제의 부적절성 내지 불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말한다. FTA를 체결하는 주체들은 협정을 통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역내시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역내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에 이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여 역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간 연계현상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FTA가 330여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형태는 WTO와 견줄만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는 이러한 현상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GATT 역시 이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결국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WTO와 같은 다자주

의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두 체제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에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 한-ASEAN 상품무역분야 FTA가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국내외의 많은 논란 속에 체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국가들과의 FTA 역시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한-EU FTA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면서 주요 무역상대국이기도 하다. EU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보다 절실하게 원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를 통하여, 무역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FTA 주도국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

FTA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대응책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한-미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는 국민적인 관심속에 많은 대응책이 논의되었다. 한-EU FTA를 비롯한 앞으로의 FTA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점의 지적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의 제시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한-EU FTA는 한-미 FTA 만큼 국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국내법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협정 자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논점을 미리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EU FTA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간 FTA 또는 EU의 FTA에 관한 논의가 주로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이고, 법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조망은 비교적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FTA가 국가간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체계의 형식을 통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하여 법리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EU FTA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였던 EU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법리적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EU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관해서 분석하고, 이것의 법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한-EU FTA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EU가 체결한 다양한 FTA와 한-EU FTA의 상관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은 한-EU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EU FTA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EU FTA에 나타날 법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선 EU가 기존에 체결한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들을 넓은 의미의 FTA로 간주하고,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에 관하여 협정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논의의 대상이 되는 EU FTA와 한국이 체결한 FTA 사이의 법적 조화가능성을 예측한다.

한-EU FTA가 주는 법적 영향 및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가 한-EU FTA 및 이후의 FTA에 관한 법적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 2 장 한국과 EU

제 1 절 EU 개관

1. EU의 성립과정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로 구성되어, 총인구 5억명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지역 경제협력체이다. EU는 상품 노동 자본 기술의 역내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단일통화인 Euro가 채택되어 200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EU는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의 헌법을 보유하고 외교 안보 법률 내무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지향하면서 꾸준히 회원국을 확대하고 있다.¹⁾

EU의 기원은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출발한다.²⁾ 최초의 유럽국가간 공동체의 모태는 1947년의 베네룩스 3국동맹; 그리고 당시 유럽의 주종산업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중심으로 묶인 1951년 유럽 6개국³⁾의 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58년에는 6개국의 로마조약 체결에 따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였고, 아울러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도 탄생하였다. 1967년에는 ECSC, EEC, EURATOM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 통합되었다.⁴⁾

1) 신정섭, EU와 ASEM에 대한 우리의 자세, 외교 63호, 한국외교협회, 2002. 10. 19년.

2) Damian Chalmers, *European Union Law (Volume I) - Law and EU Governmen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Aldershot, 1998, pp. 5-7.

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4) 1967년에 발효된 통합조약(Merger Treaty)으로 위의 세 지역협력체가 묶여 새로운 체제인 EC를 위하여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등이 통합되었다.

당시 유럽에는 EEC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존재하였으나,⁵⁾ EC는 1973년 EFTA의 중심국인 영국과 덴마크를 포함하였고, 아일랜드까지 EC에 가입하면서 더욱 규모가 확대되었다.⁶⁾ 그러나 1970년대 국제통화위기와 석유과동으로 유럽이 경제적 난항에 빠지자 EC 회원국들이 제각기 자국의 이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동체의 존속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정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되찾고, 그 상징으로 분기마다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통화분야에 있어서 협력강화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⁷⁾

1985년에는 1992년까지 단일시장을 창설하기 위한 계획인 역내시장 통합백서(White Paper on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를 채택하고, 1987년 역내시장통합과 관련하여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EC의 가시적인 경제협력과 실질적인 통합노력이 이루어졌다.⁸⁾ 한편 1989년부터는 독일이 통일되고 구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 진출과 기존 EC 체제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⁹⁾

1991년 체결된 마스트리트 조약(Maastricht Treaty on European Union)이 199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를 통하여 시장통합을 주요 목표

5) EFTA는 EEC의 창설을 원하지 않았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7개국에 의하여 창설된 FTA이다. 1958년 EEC가 창설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영국이 EEC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설득하여 1960년 EFTA를 체결하였다. 현재는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4개국만 남아있다.
 6) 1973년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 EFTA에서 탈퇴하자, EFTA의 개별 국가들은 EC와 FTA를 체결하였다. 즉, 1994년 EC와 EFTA 사이에 EEA가 발효되기 전까지 유럽지역에는 EC와 EFTA라는 경제협력체가 공존하였다[Ralph H. Folsom, *European Community Law*, West Publishing Company, St. Paul, 1992, pp. 15~17].
 7)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1년에는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다.
 8) 이 시기부터 환경, 건강, 사회결속 등 시민 복지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EC의 공동 정책에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9)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추가로 EC에 가입하였다.

로 하던 EC에서, 경제 및 화폐통합 나아가 정치통합 등을 포함하는 EU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1994년에는 EU 12개국과 EFTA 6개국 사이에 EU와 EFTA를 하나로 묶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으로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단일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1994년 이후에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신규회원국이 EU에 가입하였고, 여러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¹⁰⁾

2002년부터는 단일통화인 Euro가 도입되었으며,¹¹⁾ 2004년에는 동구 8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과 키프러스, 몰타 등이 EU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2007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함으로써 로마조약 체결 50년 만에 EU 공동체는 6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표 1> EU의 확대 역사

확대시기	회원국	신규회원국	GDP(십억달러)	인구(백만명)
1차(1973)	9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10,412	273.3
2차(1981)	10	그리스	10,638	288.2
3차(1986)	12	포르투갈, 스페인	11,948	338.5
4차(1995)	1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12,808	372.0

10) 한국은 1963년 EC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1965년에 주 EC 대표부를 개설하였는데, EU 창설 이후 1996년에는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여 무역과 경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11) 현재 유효화는 EU의 13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베니아)에서 공용화폐로 사용되고 있다.

확대시기	회원국	신규회원국	GDP(십억달러)	인구(백만명)
5차(2004)	25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13,503	479.9
6차(2007)	27	루마니아, 불가리아	13,628	509.3

앞서 살펴본 EU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통합과 확대현상을 지역협력체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초 EC 성립 초기의 자유무역활성화는 FTA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차츰 국가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형태로 진전되었다. 이후 EU는 공동통화 사용으로 인하여 화폐동맹(Monetary Union)을 이룩하였고, 중앙기구에 의한 공동의 경제정책의 실시로 경제동맹(Economic Union)까지 실현하였다. 현재 EU는 통합과 확대를 반복하면서 경제동맹의 단계를 넘어 중앙입법과 통제를 통한 정치적 동맹(Political Union)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¹²⁾

2. EU의 현재

EC 창설 초기부터 반세기의 시간동안, EU는 지역협력체라는 내부적인 측면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적 확대도 진행하였다. 초창기 EC 차원의 관세통합이 경제적 이익추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EU 차원의 경제 및 정치적 단일통합의 길로 성큼 들어섰다. 또한 리스본 전략으로 경제적 통합이 점점 확고해 지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12) Catherine Barnard,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 The Four Freedom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4, pp. 8-24 참고.

아울러 정치적 통합으로 진정한 유럽 연방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헌법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왔다.

EU는 2007년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총생산이 세계 총생산의 20.8%, 수출입은 각각 40.4%, 39.8%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훨씬 앞섰다. EU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내 회원국 사이의 무역이 6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U의 경제적 위상이 성장하면서, 세계 정치 무대에서도 EU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7년 3월 8일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사이에 팽팽히 맞선 에너지정책 목표달성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유럽이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합의를 본 것은, 단순히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결속 능력을 보여준 기회로 여겨지며, 향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EU 영향력이 증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EU의 시장통합 작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과 함께 더욱 많은 숙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통합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각 회원국이 EU 차원에서 제정한 입법 지침을 자국의 시행법으로 제정해야 한다.¹³⁾ 이를 위해서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수많은 규정에서 오는 기업 등의 행정적 부담을 2012년까지 25%로 줄여서, 연간 13억 유로의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향후 추진할 10개 행동강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3) 그러나 최근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회원국마다 시행법 제정 작업 속도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기준 총 1620개의 지침 가운데 각 지침에 명시된 자국 시행법 제정 기간 내 제정되지 않은 비율이 1.9%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0.3퍼센트 증가에 그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적극 이행을 촉구하였다.

3. EU의 법적 성격과 무역관련 법규의 특징

현재의 EU는 원칙적으로 초국가적(Supernational)인 지역협력체이다.¹⁴⁾ EU가 존재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EU의 전신인 지역협력체들 역시 법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 EU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파리조약(ECSC의 경우) 또는 로마조약(EEC와 EURATOM의 경우)을 그 존재 근거로 하고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EU 차원에서 제정된 규범이 회원국 국민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¹⁵⁾ 제3국과도 직접 관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가(동맹국 또는 합중국)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는 독립된 영토가 없으며 조약이 인정한 범위에 한하여 권한이 주어지므로, 국가와 완전히 동일한 국제법적 주체는 아니다.¹⁶⁾ 따라서 EU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국제법상 국가개념의 범주에 넣어 해석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EU의 통합과 발전이 계속 진행중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그 접근 방향과 관련 문제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해해야 한다.¹⁷⁾

EU는 무역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유럽지역의 수입제한적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 EC는 상품의 표준화 작업, 정부조달 계약에 있어서 EC 회원국이 아닌 국가

14) Amaryllis Verhoeven, *The European Union in Search of a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Theory*, Kluwer Law International, Hague, 2002, p. 136.

15) Josephine Steiner Lorna Woods Christian Twigg-Flesner, *EU Law (9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p. 89.

16)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377면 참고.

17) EU의 법적성격과 국가개념과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자체로도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이 연구의 중심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된 부분에 따라 적절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의 회사가 입찰하는데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 공동 농업정책, 원산지규정, 반덤핑법규, 다양한 자율규제협정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였으며, EC의 이러한 수입규제는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와 무역분야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EC의 반덤핑법규는 일차적인 무역보호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었고, 그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GATT 합치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남용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들과의 무역마찰을 낳았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들 중에서 30%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유럽의 한국에 대한 제소는 모두 26건으로, 이 중 7건만 기각되었을 뿐 가격인상합의 1건을 제외한 18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¹⁸⁾

WTO 체제의 출범은 기존에 취해지던 유럽의 규제중심 무역법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일차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WTO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EU 역시 이와 같은 WTO 지원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제 2 절 한국과 EU의 무역

1. 한-EU 무역구조

EU는 중국,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의 무역상대국이다. 한국의 선진국 대상 상품무역의 추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수출시장으로서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오던 미국이 2005년에 그 자리를 EU에 내어주었는데, 이는 그만큼 EU가 한국의 중요한 상품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¹⁹⁾

18)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223-224면.

19) 수입 면에서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미국과

그만큼 한국에게 수출시장으로서의 EU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²⁰⁾

1963년 한국과 EC가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무역량을 보면, 1971년 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2004년 378억 3천만 달러에 달해 440배 증가하였으며, EU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2억 5,700만 달러에서 241억 8,700만 달러로 94배 이상 늘어났다. 2006년 한국과 EU의 총 무역규모는 800억 달러 가까이 이르고 있다.

EU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EU 확대가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EU의 역외수입 전체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2.7%에서 2005년에는 2.8%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EU의 역외수출 전체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의 1.7%에서 2005년에는 1.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 비율의 차이가 아직 크다.

EU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3대 선진국과의 상품무역 면에서 살펴보면, EU에 대해 가장 큰 흑자를 누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 EU도 한국을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EU는 전체 교역 중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EU 역내국가들 사이의 교역을 제외한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 9위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EU와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FTA 등을 체결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을 제외하면 6위, ASEAN 국가들을 제외하면 5위 정도가 된다. 반면에 수출대상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15위로 떨어지며, EU 인근 국가 및 ASEAN을 제외하더라도 10위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은 EU의 수출시장으로서보다는 EU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김도훈, 한-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7. 1, 34면].

EU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과 거의 동일하여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반도체, 귀금속, 각종 화학제품 등이다. EU 구성국 중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이밖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한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다.²¹⁾ 현재까지 EU와의 무역은 대부분 2004년 EU 확대 이전의 15개국과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부분이다. 그러나 통합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와의 무역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2. EU의 산업구조와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

EU 경제는 3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5년 2/4분기 EU 25개국의 GDP를 각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액으로 환산해 보면, 무역, 수송 및 통신서비스업(21.4%), 비즈니스 및 금융서비스업(27.4%), 기타 서비스(23.1%) 등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3차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71.9%에 달하고 있다.²²⁾

국가별로 보면, 독일 및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아서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국 및 프랑스는 금융부문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은 무역, 수송, 통신서비스 부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신규회원국은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비스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1) 한국과 EU 사이의 무역규모와 유형분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penhagen Economics & Prof. J. F. Francois,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Copenhagen Economics, 2007. 3, 10면 이하]를 참조할 것.

22) EU 15개국만 보면, 3차산업 비중이 약간 늘어나 7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3차산업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EU 중에서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전 산업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시장 점유율이 평균 3.53%이며, 제조업의 경우는 4.96%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기계류의 시장점유율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21.82%로 일본의 점유율 33.77%에 이어 둘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독일 기계산업의 시장점유율은 기간 중 평균 13.48%로 일본(37.38%) 및 미국(22.98%)에 이어 한국의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²³⁾

독일 다음으로 무역규모가 큰 영국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가공식품(9.9%), 철도 항공기 선박(2.96%), 정밀기기(2.92%) 및 기타 제조업(10.95%) 분야에서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다. 특히 가공식품과 기타 제조업의 점유율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일부 특정산업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상당히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죽제품, 신발류가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이 각각 14.76% 및 11.33%에 이르며 섬유제품, 기계 및 자동차에서의 점유율도 각각 6.32%, 3.34% 및 2.63%를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문은 철도 항공기 선박(5.48%), 통신기기(3.89%), 화학공업(3.95%), 가죽제품(3.23%) 등이다. 또한 가공식품(2.27%), 축산물(1.65%) 등 1차산품의 한국시장점유율도 1.18%로 영국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EU FTA에서 한국에 대해 해당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EU국가들을 보면 아일랜드는 컴퓨터(4.35%)에서, 네덜란드는 정밀기기(5.15%) 및 자동차(3.84%), 스페인은 시멘트와 유리(2.63%) 및 가죽제품(1.66%)에서, 스웨덴은 자동차(3.82%)에서 한국시장점유율이 높다.²⁴⁾

23) 그 다음으로는 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로 각각 6.43% 및 5.99%의 점유율을 보인다.

24) 이밖에 동구유럽의 신규회원국을 살펴보면, 헝가리 및 폴란드는 축산물(각각 1.76% 및 0.32%)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키프로스 및 몰타는 한국 광

3. 주요 통상문제

(1) 상품무역

자동차 분야는 한국과 EU가 매년 협의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EU측은 오랫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무역역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04년도 EU에서의 한국산 승용차 판매는 총 59만대로 EU시장 점유율은 3.3%인 데 반해 EU 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1만 4천대로 EU의 국내 승용차시장점유율은 1.6%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최근 수입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EU산 자동차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EU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 증가율은 2001년 64.6%, 2002년 114.5%, 2003년 25.8%, 2004년 4.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중형 또는 소형차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U측에서 이러한 차종의 판매에 좀 더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이 EU에 대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산 및 축산물 분야에서 양자간 현안문제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것이다. EU는 한국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이 까다롭고 수입기준이 EU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이 부분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SPS)이 사실상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은 인삼제품의 수출에 있어 독일이 이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출에 추가적 비용이 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⁵⁾

의약품 및 화장품류는 EU가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한국에 많은 개선을 요청하였다.²⁶⁾ 화장품과 관련해

산물 시장에서, 체코는 시멘트와 유리 및 기계장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철강에서, 몰타는 반도체에서 상당한 한국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5) 또한 삼계탕을 포함한 신선가금육의 수출을 허용해줄 것과 목재포장재 지침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6) EU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 다국적 제

서는 한국의 적합성 및 안전성 검사와 기능성화장품제도 도입이 EU 화장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⁷⁾ 식약청에 따르면, 기능성 심사를 통과한 수입화장품의 품목 수는 2002년 100개 품목(12.9%)에서 2003년 180개 품목(17.7%), 2004년 369개 품목(28%)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캄코더의 세번(Tariff Headings) 분류 문제도 있다.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캄코더가 그 기능에 따라 관세율이 4.9%와 14%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가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이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은 추가기능이 가능한 캄코더의 경우 이미 통관된 물품에 대해 14%의 관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EU 회원국가별로 소급적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는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⁸⁾

(2) 무역구제조치

EU는 인도, 미국과 함께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편이다. 2005년 6월까지 WTO에 보고된 반덤핑 제소건수를 보면 EU는 1995년 이후 총 318건을 제소하여 인도(412건), 미국(358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제기한 반덤핑제소 건수가 최근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제소된 건수를 보면 EU는 인도(80건), 미국(67건), 중국(60건)에 이어 52건으로 여전히 많은

약업체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유럽제약협회(EFPIA)의 청원을 수용하여 1999년 6월 무역장벽규제(Trade Barriers Regulation; TBR)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의 약가산정 방식 개선에 따라 동 조사는 2000년 중지되었으나, 사안이 종결되지 않고 장기 계류되고 있어서 완전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27) EU 집행위원회는 1998년 5월 이래 이 문제와 관련하여 TBR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사전품질검사제의 사후관리제로의 전환, 라벨링 사전 승인제 폐지, 화장품 원료에 대한 EU내 검사결과 인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시 제출자료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TBR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하기를 요청하였다.

28) 김홍중, 이창수, 김근태, 강준구, 박순찬,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76~80면.

반덤핑제소를 하고 있다. 같은 시기까지 한국에 대한 EU의 반덤핑제소는 총 25건으로, 한국은 중국(56건), 인도(27건)에 이어 EU로부터 많은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U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나면서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EU의 한국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 조사 및 제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5년 12월까지 총 6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7개 품목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였다. 반덤핑 규제와 관련하여 2005년 7월까지만 해도 총 9건이 시행되었으나 주철제관련결구류, 14인치 컬러 브라운관, 상업용 전자저울 등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종결되었으며, PET 칩의 경우는 2005년 12월 1일부로 종결 예정이었으나, EU 기업들의 문제제기로 중간재심판정이 내려져 반덤핑조치가 이어졌다. 2004년 6월부터는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산 합성고무와 철강제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EU는 자신의 적극적인 보조금 활용정책을 고려하여 상계관세조치의 부과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부터 보조금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6건이 제소된 바 있다. 현재 D램 반도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2003년 4월 33%의 예비판정을 하였고, 8월에는 34.8%의 최종 상계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EU는 상계관세의 적절성 여부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3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입되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가 적절히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²⁹⁾

29)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상계관세부과조치 감시를 위해 2004년 6월 및 10월 각각 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통계가 불일치하며, 독립적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이후 행해진 조치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계관세부과 이후에도 하이닉스의 EU내 시장점유율이 유지 내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EU 업계가 지적하면서

이처럼 EU가 꾸준히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외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EU가 15개 회원국 당시에 적용하였던 반덤핑조치가 10개 신규 회원국들을 가입시킬 때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 역외국으로서는 그동안 반덤핑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³⁰⁾ 이러한 경우도 EU 역내시장 보호와 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산업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한국과 EU와의 조선분쟁은, 2004년 12월 WTO 패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과 선박제작금융 부문을 제외한다면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EU가 2002년 6월 결정한 계약가격 6% 한도의 보조금 지급 결정은 WTO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현시점에서 조선분야는 더 이상 양자간 분쟁의 쟁점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자간 입장차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양자간 시장접근 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WTO에서의 분쟁절차와는 별도로 2002년 12월부터 OECD 조선작업반에서는 OECD 신조선협정(New Shipbuilding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OECD 신조선협상의 주요 이슈는 보조금과 가격관행(pricing practices)인데, 한국은 WTO 협정보다 강화된 보조금 규율은 선호하면서도 가격관행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는 이 협상에서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관행에 대한 규율 도입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SNG 회의 이후 중단

우회수출가능성 등 상계관세부과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30) 김도훈, 앞의 논문, 36면.

된 가격관행 논의를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EU, 일본 및 한국이 현행 WTO 보조금 협정보다 강화된 규제를 의미하는 ‘WTO Plus’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현재 협상의 진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³¹⁾

(4) 서비스무역

- 법률시장 개방

EU는 그동안 한국의 법률시장에 관심이 많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EU 공동위원회와 한-영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즉, EU는 한국이 WTO에 제출한 GATS 양허안을 평가하지만,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EU는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 GATS 협상 결과 이전에 대폭적인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³²⁾ EU는 법률서비스시장 조기개방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국변호사의 국내변호사 고용 및 동업 문제에 있어서 아직 국내 법률서비스업체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여건 변화를 보아가며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변호사수가 증가하고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궁극적

31) 김홍중,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 앞의 책, 82~83면.

32)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EU 이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총 11개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미국, 호주 등은 국내 변호사, 로펌과의 동업, 합작과 국내 설립된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으로 법률시장 개방 환경을 증진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뉴스 공급업 개방

EU는 한국이 조속히 뉴스 공급업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뉴스 공급업이 기본적으로 정보주권 보호, 문화정책 성취 유지, 여론형성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 내 통신사가 외국의 우수 통신사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장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그동안 뉴스 공급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2000년부터 25%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2001년 9월 뉴시스(Newsis)가 로이터와 뉴스공급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등 경쟁적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통신사의 직접매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기간통신사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서비스 개방

한국의 금융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양자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5% 보고제도와 금융회사의 이사 수 제한 등이다.

5% 보고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의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그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라고 한다.³³⁾

33) 5% 보고제도는 주식유통시장에서 주식 등의 대량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 작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며,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기존 경영진에 방어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과 관련한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

2005년 1월 17일 한국은 증권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5% 보고제도를 개정하였다.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반복공개매수 허용 등 M&A 과정에서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보유목적에 추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유목적이 경영참가인 경우에는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하였다.³⁴⁾

2005년 1월 한국의 국회의원 21명은 외국인 임원의 거주지 제한 및 외국인 이사 수 제한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재경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해외언론과 외국투자자들은 이를 개방정책의 후퇴 및 반외국인투자 정서로 보았으며, EU는 같은 해 4월 20일 맨델슨(Mandelson) 통상담당집행위원의 서한을 통해 외국인 이사의 제한은 한국의 WTO/GATS 양허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을 법제화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 지적재산권

EU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품 등 고가 사치품의 위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입국자에 의한 위조물품 통관에 대해 효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과다한 소송비용과 높은 형량 등 지재권 보호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샴페인 등 지리적

도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34) 일부 외신은 이 제도의 개정이 외국인투자자를 통제하고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하였다. 한국은 5% 보고제도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5% 보고제도의 변경 당시에 미국의 제도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외국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보유목적 기재사항 등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의 보호가 미흡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WTO/TRIPS 협정 등 지재권 보호가 국가 경제발전 및 국제적 협력강화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위조상품 단속,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04년 5월 ‘지재권보호 정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밝혔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해서 현재 특허청장회담 개최, 심사관 교류 및 특허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환경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승인(Authorisation) 시스템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여 등록하고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서 한국 등 역외국은 이 제도가 역외국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을 우려해 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2003년 10월 최종안 발표 이후 일부 수정된 법안이 2005년 11월 17일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다.

REACH는 원래 화학물질로부터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EU내 화학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이용되어 EU에 대한 세계 각국의 화학제품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REACH 시행으로 EU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및 독성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 10억 달러에 달하던 한국의 EU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REACH가 WTO 규범에 합치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REACH가 WTO TBT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REACH가 화학물질의 실제 위험도와 상관없이 연간 10톤 이상의 모든 제조, 유통,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며, 제조사 및 수입자는 동일물질의 사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의무를 지는 등 관련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REACH 외에 환경관련 통상현안은 납 성분이 포함된 수출품에 대한 규제다. 한국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PDP 패널의 경우 기술적 문제점으로 납 성분이 포함되는데, 이는 EU의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대체가능성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외가 적용되어야 관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피해와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므로, PDP 제조 때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체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납이 포함된 물질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EU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³⁵⁾

35) 김홍중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 앞의 책, 88~90면.

제 3 장 FTA에 대한 일반적 분석

제 1 절 FTA

1.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FTA는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을 위한 법적 수단이다.

FTA는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형성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FTA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 개의 FTA를 체결하였고,³⁶⁾ 미국의 입장 변화는 그 동안 FTA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는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오히려 FTA가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

FTA는 관세동맹과 함께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관세동맹에 비하여 매우 높다.³⁷⁾ FTA

36)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FTA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관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ATT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80년대 미국의 FTA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지역주의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추구, 쌍무적인 무역관계 개선과 균형 있는 무역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상의 목적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NAFTA가 발표되어 북미지역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49-50면].

37)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95% 이상이 상품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FTA이고, 관세동맹 등의 기타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에 불과하다.

가 관세동맹에 비하여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자리잡은 이유는, 협정의 모든 체결국이 동일한 대외관세 정책을 취해야 하는 관세동맹에 비해서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일반적인 FTA의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FTA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³⁹⁾ FTA의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이 다른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FTA의 중심요소는 상품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이 FTA 협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범위를 포함하는 FTA를 좁은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

38)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3. 5. 22, 6면.

39) NAFTA는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환경, 노동, 수량제한금지, 관세평가와 세관수속, 기준과 인증, 위생식품검역,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인적이동 등을 포괄하여 그 대상 범위가 넓다.

40)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25면.

의 FTA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무역촉진 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⁴¹⁾를 첨가하는 FTA도 있다. 이와 같이 FTA의 중심요소에 더하여 부수적인 협정이 포함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FTA라고 하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FTA가 증가하는 추세이다.⁴²⁾

2.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FTA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WTO 출범 이전의 전통적인 FTA의 목적은 단순한 관세인하 또는 무역의 확대에 있었으나, WTO의 규범들이 무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FTA는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FTA의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도 WTO 출범 이후의 현상이다.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화하면서 다자주의 규범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인데, FTA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즉, 각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장벽의 철폐를 기본으로 하였던 기존 FTA의 틀에서 벗어나 투자,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FTA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시도하였고, 결국 각국이 처한 상황과 협정의 상대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FTA가 출현하였다.

과거의 FTA는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

41) 무역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력 사회 문화의 교류 등이 있다.

42) 삼성경제연구소,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3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많은 FTA가 체결되었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서로 다른 지역주의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간 FTA가 기본적인 체결방식이었으나,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⁴³⁾

이와 같은 변화는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각국의 FTA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것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FTA에 대하여 각국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는 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강조되었다. 각국과 WTO는 FTA를 통한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가 결국 다자주의 차원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3. FTA의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FTA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FTA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⁴⁴⁾ 속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등장하게 되었다. FTA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⁵⁾

43) FTAA는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34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44) 여기에서 지역협력체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권을 가지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집단(bloc)을 의미한다.

45) FTA의 유형을 당사국의 수가 2개국인 양자간 FTA(bilateral FTA), 당사국의 수가 3개국 내지 5개국 이하인 복수국가 사이의 FTA(plurilateral FTA), 그리고 당사국이

<표 2> FTA의 유형

유형	예	효과
국가간 FTA (양자간·복수국간)	한-칠레 FTA(양자간) NAFTA(복수국간)	- 기존 시장의 확대 - 새로운 시장진출
국가-지역협력체 FTA	MERCOSUR-칠레 FTA	- 지역협력체로의 시장편입 - 새로운 시장 진출
지역협력체간 FTA	FTAA	- 대륙간 규모의 시장 확대 - 다자주의 수렴

첫째, 국가간 FTA는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FTA를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각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FT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FTA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FTA 중에서 한국과 칠레 사이의 FTA가 양국간 FTA의 예이며, 복수국간 FTA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FTA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FTA는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MERCOSUR FTA가 이러한 예

6개국 이상인 준다자간 FTA(quasi-multilateral FTA)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고준성,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77면].

라고 할 수 있다.⁴⁶⁾ 멕시코-EU FTA와 같이 어느 국가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FTA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가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FTA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ERCOSUR와 NAFTA 사이의 FTA인 FTAA, 그리고 MERCOSUR와 EU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⁴⁷⁾

4. FTA의 국내법적 효력

미국이나 EU와 같이 FTA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과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과 비준, 그리고 의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⁴⁸⁾ 따라서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과 의회의 동의는 국제법상 그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국내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서명 비준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FTA는 국내법으로서 직접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국내 재

46) 칠레는 MERCOSUR와 FTA를 체결하면서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다.
47)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1) - 브라질의 FT A ,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41~43면.
48)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6조 제 1항].

판에서 FTA가 사안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FTA의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⁹⁾ 또한 기존의 국내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FTA의 체결로 인하여 생겨난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기존 국내법과 FTA 사이에 특별법 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FTA 규정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내적 효력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FTA의 체결이 곧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⁵⁰⁾

FTA가 직접적인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FTA의 내용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FTA라는 조약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관련 국내법이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FTA에 의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령의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⁵¹⁾ 결국 FTA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든 그렇지 않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이에 따라 국내법 차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⁵²⁾

49) 대법원도 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도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GATT의 직접적용을 인정하였다(1992. 7. 14, 대판 91누10763 ; 1998. 8. 21, 97누13115 사건 참조).

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입법을 촉구하는 의회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51)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181면.

52)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28~30면.

제 2 절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FTA의 체결 국가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FTA의 역내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진다.

무역창출효과는,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FTA 발효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결국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FTA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진다.⁵³⁾

그러나 FTA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무역의 변동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FTA의 특혜적인 역내무역장벽의 제거는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로 비교우위를 가진 역외국의 특정제품이 있었다면, FTA의 체결은 기존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 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53) 생산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무역전환효과를 증가한다.⁵⁴⁾ 또한 몇 차례의 다자주의의 무역협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⁵⁵⁾ 무역전환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FTA로 인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산업재배치 등은 FTA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이다. 우선 FTA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생산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협정이전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역내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당사국들은 역내의 외국 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촉진된다. 기업의 경쟁은 상품의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효율성은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완화와 맞물려 더욱 극대화된다.⁵⁶⁾

54)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47면.
 55) 다자주의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 진행되는 무역협상을 의미하며, ‘라운드(ro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의 요소를 제거 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WTO 설립이전 GATT 체제에서의 다자주의 무역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는데, GATT의 중요 목표가 관세의 인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논의를 관세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수준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1964년의 케네디라운드는 평균 35%, 1973년의 동경라운드는 평균 33%, 1986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평균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56) 그러나 규모의 경제나 기업간의 경쟁효과는 오히려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역내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즉 FTA가 당사국의 무역규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박변순, 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31-32면].

FTA 체결로 역내 투자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투자협정⁵⁷⁾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세 혜택이나 원산지규정 등으로 단일 투자협정 이상의 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통해서 주요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려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에 있어서도 운송비 등을 줄이고 무관세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FTA의 체결 의도가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많은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역외국의 기업이 FTA로 형성된 역내 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생산요소의 재배치(relocation)현상이 나타난다. 협정 이전부터 역내 각국에서 생산을 하였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축소로 기존의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비교우위를 찾아 생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부정적 효과

FTA는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FTA로 국가경제 전체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FTA 자체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

57)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에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협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이다.

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는 FTA의 틀에 막혀 주변국에 머무르면서 중심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⁵⁸⁾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은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된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FTA로 단기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FTA의 이행기간이나 유보사항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⁵⁹⁾

제 3 절 FTA의 규범적 기능

1. WTO 규범과의 병존적 기능

국제무역에 관하여 FTA와 WTO 규범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FTA는 WTO 규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58)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FTA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59) 정인교, 앞의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0 51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FTA는 체결국 사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의 축소를 역내무역을 증가시켜 당사국이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당사국들은 FTA라는 규범을 공유하여 역내무역을 규율한다. 그러나 이점은 FTA를 체결하지 못한 역외국에게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즉, FTA를 통하여 협정의 체결국들은 역내무역을 확대하면서 역외국에게는 기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외국의 시장접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협정의 당사국 사이에도 대외관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역갈절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⁶⁰⁾

이와 같이 FTA가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무역기준을 제시하게 하므로,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FTA가 WTO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주의 현상을 공고히 하고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¹⁾

역내국 사이의 무역확대와 이를 보호하는 FTA의 기능이 역외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전반적인 확대와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WTO 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시장접근을 원하는 역외국에게 당해 지역의 국가 또는 지역경제협력체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촉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결국은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⁶²⁾을 일으켜 FTA 체결현상이 확산되도록 한다.

WTO 규범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비해서는 그 대상국이 많은 반면에 구체적인 규범력은

60)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26면.

61) 삼성경제연구소,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 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0. 23, 7면.

62) A B국이 FTA를 체결하고 이어서 B C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A국과 C국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 만일 A국과 C국 사이에도 FTA가 체결된다면, 결국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단일기준의 무역규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FTA는 협정의 당사국만을 강력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WTO 규범과 FTA의 규범성은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국제경제규범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FTA들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고 WTO 규범과도 조화되어, FTA의 배타성은 줄이면서도 무역규범성은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WTO는 여러 가지 면에서 FTA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면 WTO와 FTA의 원활한 조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안정적 규제와 무역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복수국간의 FTA 체결이나 국가간 연쇄적인 FTA는, WTO가 지향하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제시할 수 있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

2. FTA의 유형에 따른 규범적 기능

FTA가 담당하는 국제경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은, FTA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FTA의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 사이의 FTA는 당사국 사이의 공통적 무역규범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즉, 당사국은 무역규범을 공유하여 보다 완전한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FTA가 신속한 분쟁해결의 도구로 작용한다. 어느 FTA가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WTO 규범보다 세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국은 당해 FTA의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무역규제가 가능하다.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에 FTA를 체결하는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는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인접한 지역경제협력체에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가 서로 인접하거나 공동의 역내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FTA 체결국은 상대방 지역경제협력체에 편입될 것이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 지역경제협력체가 인접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자는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의 체제 밖으로 역외무역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결국 FTA가 지역경제협력체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WTO 규범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하는데, 이를 통하여 각 지역경제협력체는 더욱 큰 규모의 단위로 통합하거나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FTA 규범이 WTO 규범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⁶³⁾

3. 무역 경제관련 법적 기반

FTA를 통하여 마련된 무역규범과 기준은 국제경제규범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내규범으로서 일종의 ‘법적 자원’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당사국들은 서로의 역내무역에 대하여 무역규범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국들 사이에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FTA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FTA로 무역과 관련된 규범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와 이익창출을 가져온다면, FTA를 체결한 국가에게는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구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이다.⁶⁴⁾

63)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10-111면.

64) 국가의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근간을 의미한다. FTA로 얻어진 법률적 기반이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양자를 비슷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FTA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인 것이다. 어느 국가가 다양한 국가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법적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을 잘 운용하여 무역과 국가경제에 있어서 발전을 얻을 수 있다면, 산업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즉, FTA를 체결하기 위해 국내법을 다양하게 보완한 국가는 규범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안정된 국내규범을 보유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다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차원의 견고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FTA는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FTA의 체결은, 당사국이 FTA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폐쇄적인 무역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FTA 체결을 통하여 국제경제규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얻는 경험미래에 있을 다른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같은 다자주의 협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다.⁶⁵⁾

65)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경제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국가는 선진국 등과 FTA를 체결하거나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무역량이 적거나 보완성이 약한 국가 사이에 FTA가 체결되는 것은 무역에 관한 공동의 규범을 확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훈련소'를 얻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점도 일종의 법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칠레의 FTA도 다른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

제 4 절 FTA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1. GATT 제24조

FTA에 대한 WTO의 근거규정은 GATT 제24조와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Enabling Clause)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가 있는데,⁶⁶⁾ 가장 중심이 되는 조항은 GATT 제24조이다.⁶⁷⁾ GATT 제24조는 FTA와 더불어 관세동맹까지 함께 지역무역협정으로 묶어 규율하고 있다.⁶⁸⁾ 다음은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이다.⁶⁹⁾

상이나 WTO 차원의 협상과 같은 국제적 경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협상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66) GATT와 WTO 등 다자주의 체제가 FTA 체결과 같은 지역주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이유에 관하여,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자주의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간의 무역을 통합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적 통합에 의하여 무역과 생산요소의 흐름이 보다 자유롭게 되므로, 경제적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처럼 되는 '준국가적인' 지위는 다른 다자주의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1930년대 유행하던 차별적인 양국간주의(양국 사이에는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심한 차별이 발생)로 역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째, GATT 제24조 등 지역주의 규정은 다자주의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추구'에 보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pp. 25 26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5, 264 265면에서 재인용].

67) 지금까지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2006년 3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193건인데, 그 중에서 GATT 제24조에 근거한 것이 135건이다. 이밖에 GATS 제 5 조에 근거한 지역무역협정은 36건이고, 허용조항에 근거한 경우는 22건이다[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68)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Petros C. Mavroid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p. 555.

69)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2) - 러시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32~35면.

<표 3> GATT 제24조의 주요 내용

GATT 제24조	내 용
제 1 항 /제 2 항	제24조는 동일한 관세영역에 적용되며, 서로 상이한 관세영역은 비록 동일한 관세주권에 속하더라도 다른 계약국으로 간주한다.
제 3 항	제24조는 인접국 사이에 국경인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 4 항	자발적인 협약으로 인하여 보다 밀접한 통합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며, 관세동맹이나 FTA의 목적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제 5 항	관세동맹이나 FTA 그리고 잠정협정에 있어서 협약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일 수 없고,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설립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항	제 2 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관세의 인상이 관세동맹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되었을 때에는 제28조의 보상과 교섭절차가 적용된다.
제 7 항	관세동맹이나 FTA 또는 이를 위한 잠정협정에 가입하고자 결정한 회원국은 이를 WTO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WTO는 이러한 협정의 검토 후 권고안을 작성하여 협정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당사국은 이러한 권고안에 따른 수정을 하여야만 협정들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 8 항	관세동맹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한 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은 제외)는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관세동맹국은

	제 9 항을 조건으로 비동맹국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를 적용한다. FTA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한 허용을 제외하고)가 구성지역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되는 것이다.
제 9 항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FTA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제10항	제 5 항부터 제 9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세동맹이나 FTA 설립을 위한 제안도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항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제12항	각 회원국의 지방정부가 위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GATT 제1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24조를 통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세동맹이나 FT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는 일부 국가들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FTA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거나 이를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가⁷⁰⁾ 지역무역협정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 사이의 관세나 기타 상업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관하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에

70) GATT 제24조 원문에서는 ‘관세와 다른 상업적 규제’(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역무역협정을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외에도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이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역외국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보다 높은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ATT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즉시 WTO 상품무역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에 통보해야 하고, 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제출한 계획 또는 일정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상품무역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⁷¹⁾

이와 같이 역내무역장벽이 철폐되고 동시에 역외에 대한 무역장벽을 과거보다 높이지 않는 한, 관세동맹 또는 FTA의 형태를 취하는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 의하여 WTO 체제 안에서 그 효과가 인정된다.

2.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GATT 조문그룹은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확정하여 WTO 설립협정에 포함시켰다.⁷²⁾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1947년 GATT가 설립된 후 지역무역협정의 수와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철폐가 이루어질

71) 원래 GATT 규정에는 ‘체약국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의 전문에 따라 ‘WTO 상품무역위원회’로 변동되었다.

72)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상품무역협정)를 구성하고 있는 GATT 1994의 일부이며, ‘GATT 1947의 조문해석에 관한 7개의 양해’ 중의 하나이다.

경우에 협정당사국 사이의 경제적 통합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규정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목표가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밖에 양해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GATT 제24조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품이사회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GATT 제24조 제12항에 따라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양해에 나타난 회원국의 주요 합의내용은, 관세동맹과 FTA 및 이들의 잠정협정이 GATT 제24조에 합치하기 위해서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관세 및 기타 상업적 규제에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우 가중평균 관세율 및 징수관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양해는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기타 상업적 규제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4조 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하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잠정협정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도 양해규정을 통해서 회원국이 합의하였다.⁷³⁾

73) 이밖에도 회원국은 제24조 제 6 항과 관련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 이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합의하였다. 또한 양해규정은, 제24조 제 7 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GATT 관련 규정 및 양해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되고 작업반은 그 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관세동맹과 FTA의 당사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협정

3. 허용조항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일원으로서 보다 완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합의하여 GATT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71년에 채택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에서 인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허용조항 제2항은 WTO 회원국인 개발도상국 사이에 관세 또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인하하거나 제거하는 특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제 3 항에서는 GATT 제24조 제4항과 유사한 조건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간 지역무역협정의 배타성 및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장벽이나 부당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다.

4. GATS 제5조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탄생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상인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제 2 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 5 조를 통해 특정 국가들의 특혜적 서비스 무역협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FTA 등 지역무역협정으로서의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근거조항이 된다.

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협정의 중대한 변경 또는 진전사항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24조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GATT 제22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42호, 법무부, 2001. 12, 47면].

GATS 제 5 조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GATS 제 5 조 제 4 항은 GATT 제24조 제 4 항처럼 서비스 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GATT 제24조 제 5 항의 내용과 같이 협정 이전보다 역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GATS 제 5 조 제 1 항은 GATA 제24조 제 8 항처럼 서비스에 관한 지역 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⁷⁴⁾ 이외에도 기존의 차별조치들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차별을 신설 또는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협정을 완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ATS 제 5 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협정 또는 개발도상국 사이에 서비스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즉, GATS 제 5 조는 GATT 제24조와 개발도상국을 위한 허용조항의 내용을 결합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⁷⁵⁾

GATS 제 5 조가 GATT 제24조와 다른 점은 관세동맹, FTA, 잠정협정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무역의 성격상 관세나 수량제한 등의 역할이 크지 않아 관세동맹의 개념을 서비스 무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으나,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74) 다만 GATT 제24조의 ‘substantially all the trade’라는 표현 대신 GATS 제 5 조는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라고 표현하고 있다.

75) 원용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13호, 법무부, 1997. 2, 18 19면.

제 5 절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성립과 기능

GATT 체제에서는 통보된 FTA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검토가 임시적인 작업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정의 검토에 관련된 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다자주의 규범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작업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WTO 내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WTO 일반위원회(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는 1996년 2월 7일 WTO내 상설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⁶⁾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는 FTA 체결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기존의 GATT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WTO 회원국들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⁷⁷⁾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부여한 위임사항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공식위원회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개최한다.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무역위원회와 서비스무역위원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각 지역무역협정이 운영되는 것을 격년마다 보고하

76) WTO Doc WT/L/127.

77) 원용걸, 앞의 논문, 22면.

고, 이러한 보고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하여 관련 기구에 권고한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협정의 검토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한다. 넷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주의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외에도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활동을 종합하여 매년 WTO 일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존의 작업반이 하던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구에 보고하는 등 일반위원회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

2.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와 견해의 대립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GATT 체제의 해당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주의와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⁸⁾

첫째, GATT 제24조 제 7 항(a)와 GATS 제 5 조 제 7 항(a)에 의해 WTO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WTO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허용조항 제4조(a)에 의해 개발도상국인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의 시기⁷⁹⁾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⁸⁰⁾에 어떻게 처리할

78) 송유철, 앞의 논문, 48면, 50면.

79) GATT 제24조 제 7 항(a)에 관하여, 통보의 시기를 WTO 규정에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80) 통보시기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지역무역협정이 통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WTO 회원국들은 WTO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TT 제24조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의 검토와 관련하여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⁸¹⁾

셋째,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관하여, 그 결론과 근거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다.⁸²⁾ WTO 회원국들에 의해 지역무역협정이 검토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 자체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규정의 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론의 근거를 도출하거나 이를 통한 적절한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검토는 규정의 미비와 이에 따른 이해당사국 사이의 견해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GATS 제 5 조 제 7 항(b)에 따르면 시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계획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무역협정에 주기적 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 WTO 자체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1) 즉 양해규정에 따라 가중평균관세율과 관세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한의 통계자료와 이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자료에 의해 그 경제적 효과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다.

82) 검토가 끝난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특정한 권고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를 다자주의 체제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결론적인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다자주의 규범에 대한 합치성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협정당사국이 입증해야 하는지 다른(역평)결론에 입증책임이 있는지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3.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WTO 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하려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⁸³⁾

그러나 협정 검토의 근거가 되는 관련 WTO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더욱이 회원국들이 강화된 분쟁해결기능을 의식하면서 검토된 협정의 결론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협정적체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실망과 회의론이 WTO 내 외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 및 절차의 개정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⁸⁴⁾

83) 우리나라도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즉, 지역무역협정의 WTO에 대한 통보 및 정보제공은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지고 역통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GATT 제24조에 나타나는 관세는 실행관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요산업부분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84) 원용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34면.

제 4 장 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

제 1 절 EU의 지역무역협정 개관

1. EU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와 절차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비롯한 EU의 대외적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은 1957년 로마조약에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는 1968년 EC의 관세동맹이 성립되면서 역외무역에 관한 공동관세가 설정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회원국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회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자유무역원칙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정책이 유럽차원에서 통일되어 무역관련 법규 전반에도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었다.⁸⁵⁾

EU의 대외무역은 초국가적 기관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의 제안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EU를 대표하여 무역협상을 수행하는 등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⁸⁶⁾ 집행위원회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같은 WTO 다자주의 협상에서 EU를 대표하여 협상임무를 수행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무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대외관계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관계총국, 경쟁정책총국, 농업총국, 지역정책총국 등 다양한 부서들이 협의의 통해 정책을 조율한다.

85) 결과적으로 대외 공동통상정책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으로부터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 유럽국들의 협상력의 강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었다.

86) Walter Cairns, *Introduction to European Union Law*,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London, 1997, pp. 20~26 참고.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FTA를 포함한 대외협상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독자적인 권한은 없다. 즉,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인 각료이사회가 위임한 권한(mandate)의 범주 내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집행위원회가 정책협의를 위해 각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133조위원회’(Article 133 Committee)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의제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한다.⁸⁷⁾ 각 회원국들은 133조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고 본 위원회가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⁸⁸⁾ 따라서 EU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대표권한은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마련되는 지침에 제한을 받는다.

EU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집행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필요성을 각료이사회에 제안하고, 각료이사회는 논의를 거쳐 본 협상의 개시를 승인하면서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집행위원회가 상대방과 진행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각료이사회는 협상의 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의 협상결과 등은 각료이사회에서 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최종결정을 하고,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최종결정을 한다.⁸⁹⁾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정부 외에도 경제산업단체, 기업, 이익집단 및 시민사회단체 등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87) 유럽연합조약 133조는 각료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른바 ‘133조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들과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된다.

88) 이 외에도 각료이사회는 하부조직으로 EU에 파견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도 각료이사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한다.

89) 유럽연합조약 133조 4항.

특히, 유럽의 경제와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기업 등 주요 사회경제주체들은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상호작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 의제 및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여타 행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⁹⁰⁾

2. EU의 지역무역협정 정책과 체결된 주요 협정들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EU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차적으로 WTO 및 다자주의를 선호하면서, 아울러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병행하는 이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EU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물론 WTO 출범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다자무역 자유화를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EU는 지역 및 양자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는데, 특히 유럽 주변국과의 지역협력체제 확립에 노력하면서 EU 확대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지역 및 양자협력과 관련한 EU의 노력은 EU의 지역무역협정 동향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U는 이미 1995년 12월 31일부터 터키와 관세동맹을 맺었고, EFTA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과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위스와는 별도의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는 2004년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 동구 유럽 국가들과 이미 1980년대부터 무역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한 바

90) Chung Rok Pang, "Policy Networks and Multiple Lobbying Strategies in EU Trade Policy-Making", *Asia-Europe Journal*, vol. 2, no. 3, 2004, pp. 429-444 참고.

있고, 그로부터 약 10년 이후 이들 중 동구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EU는 지중해 국가들과 쌍무적인 지중해연안국 제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을 통해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2010년까지 유럽 지중해 자유무역지대(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동 협정의 중간단계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지금까지 튀니지(1998년 발효), 이스라엘(2000년 발효), 모로코(2000년 발효), 요르단(2002년 발효), 이집트(2004년 발효), 알제리와 협상을 마치고 팔레스타인과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며, 레바논과 시리아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및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는 FTA의 성격을 지닌 제휴협정의 전단계로서 지역간 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상황에서 FTA를 협상 중에 있다.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제도의 국가들과는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을 이미 체결하였다.

EU는 아직 제휴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기본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는 1990년대 말 FTA 전단계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인도와도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다 진전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

EU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랜 정책의 기본은, 정치적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합의점의 도출에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주로 협력강화와 무역안정, 해당국에서의 유럽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EU는 아시아 지역에 안정된 투자를 확대

하는 것을 추구하였다.⁹¹⁾ 과거 EU와 아시아 지역의 대화와 관계개선은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와 ASEAN을 상대로한 동남아시아를 전통적인 틀로 삼았었다.⁹²⁾ 그러나 개방 정책의 추진과 WTO 가입을 이룬 중국, 또는 엄청난 무역량과 그에 따른 여러 분쟁의 상대방이 된 일본 등이 EU와의 대화상대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EU는 위와 같이 다수의 복잡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EU 대외 무역의 3분의 1 이상을 무관세로, 3분의 1일 특혜관세로,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WTO 체제에 근거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⁹³⁾ WTO 회원국들 대부분은 EU와의 무역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특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대만,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한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10여국에 불과하다.

제 2 절 EU 지역무역협정의 분석

1. 유럽국가들과의 협정

EU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은, EU에 참여하지 않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협정, 중 동구 유럽국가와의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그리고 서발칸반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 등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EU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EU에 참여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과 실질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결하였다.

91) Nicholas Moussis, *Guide to European Policies (10th revised edition)*, European Study Service, Rixensart(Belgium), 2004, p. 433.

92) 이들 국가들은 과거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93) Pascal Lamy,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U'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in Trade Policy", *World Economy*, vol. 25, 2002, pp. 1399-1413 참고.

EFTA 국가 중에서 스위스를 제외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는 물품, 사람,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협정⁹⁴⁾을 1994년부터 체결하였다.⁹⁵⁾ 이밖에 덴마크 자치령인 페로제도와는 FTA를 체결하였다.

EU는 1972년에 EEA에서 제외된 스위스와 FTA를 체결하여 1973년 1월부터 이를 발효시켰다. 원래 스위스는 1992년 5월, EU-EFTA EEA 협정 체결에 참여하면서 EU(당시 EC) 가입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EEA 협정의 비준이 부결되었고, 동시에 EU 가입 협상도 중지되었다.⁹⁶⁾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FTA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분야에 관한 협정을 1999년 6월에 추가로 체결하면서 2002년 6월부터 발효시키고 있다.⁹⁷⁾ 또한 스위스는 2004년 10월부터 8개의 새로운 분야⁹⁸⁾의 협정 및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의 EU 신규가입 10개국 확대적용을 실시하고 있다.⁹⁹⁾

EC 시절인 1991년 이후부터 중 동유럽국가의 지역 안정과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중 동구 유럽국가와 EC 사이에는 많은 유럽협정들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유럽협정들은 무역, 정치적 대화, 법체계의 조정, 산업, 환경, 운수, 세제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었으며, 유럽의 단계적인 자유무역권 형성과 중 동구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후 유럽협정을 체결하였던 중·동구

94) http://secretariat.efta.int/Web/InfoKit/Info_Kit/WhatistheEEA

95) 리히텐슈타인은 1995년부터 참가하였다.

96) 그러나 스위스의 EU 가입신청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97)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는 사람의 자유이동, 농산물 무역, 정부조달, 공업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승인, 항공수송, 도로·철도수송, 스위스의 제5차 연구 프로그램·프레임워크로의 참가 등이다.

98)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협력, 농산가공품 무역의 자유화, 이자과세, 환경, 통계, 오디오비주얼, 국경관리의 안전관리와 난민에 관한 결정, 스위스에 거주하는 EU국적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2중과세 철폐 등.

99)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switzerland/index_en.htm

유럽 국가들이 EU 통합에 단계적으로 참여한 결과,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의 8개국 2004년 5월에,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2개국이 2007년 1월에 EU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EU와 유럽협정의 상태로 남은 국가는 더 이상 없다.

유럽협정과 EU통합으로 인하여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었다. 유럽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단계적으로 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되어 2002년 1월까지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유럽협정을 통하여 범유럽 원산지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EU(당시는 15개국), EFTA, 중·동유럽 8개국, 키프러스, 몰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위 국가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가공과정에서 제품에 첨가된 경우, 제품수출국 또는 EU의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EU 내에서 관세가 면제되고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따라 특혜를 얻어 수출될 수 있었다.

중·동구 유럽 국가들의 가입에 따른 회원국 확대 이후, EU는 서발칸국가들¹⁰⁰⁾과 터키를 향후 EU 추가 확대 대상국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와는 중·동유럽 국가와 EU 가입의 전 단계로서 체결한 1990년대의 유럽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협정(Interim Agreement on Trade and Trade Related Matters)들을 발효시켰고, 알바니아와도 2006년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관련 부분만 먼저 잠정 발효시키고 있다. EU는 크로아티아와의 EU 가입 협상을 2005년 10월부터 개시하면서, 마케도니아를 200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가입후보국으로서 승인하였다.¹⁰¹⁾

100)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01) 서발칸 지역에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하여 32건의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이것을 하나의 지역무역협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였다. 2006년 12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포함한 관계

2.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의 협정

(1) 지중해 국가들과의 제휴협정

EU 15개국 대표들과 지중해 연안 11개국¹⁰²⁾ 및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대표들은 1995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국가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EU와의 통합 내지 EU와의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¹⁰³⁾

EU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지중해 국가들과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또는 Euro-Mediterranean Agreements)을 연이어 체결하였다. 이 연합협정은 경제, 사회, 문화, 재정 등을 포괄하면서 물품 및 서비스무역, 자본거래의 단계적 자유화 조건도 규정하고 있어서, FTA의 자유무역화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EU가 모로코, 튀니지와 맺은 협정을 보면, 협정의 발효 후 최장 12년의 이행기간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이행하게 되어있다. EU 측의 공업제품관세는 이미 철폐, 지중해 국가측은 이행기간 중에 철폐된다. 농산물 무역도 서서히 자유화된다. 다음은 EU-알제리 제휴협정의 기본적인 본문의 구성이다.

국이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미 이 지역 국가들이 일부 포함된 단일 지역자유무역협정으로 중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이 있었지만, 2004년 5월의 EU 확대에 따라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제외되었고, 2007년 1월의 EU 확대로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제외되어, 크로아티아만으로 사실상 해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은 CEFTA를 서발칸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여러 규칙의 조화와 분쟁해결,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여러 규정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CEFTA의 확대와 개혁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서발칸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102)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터키, 키프러스, 몰타가 여기에 해당한다. EU와 시리아는 이미 1977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103)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regions/euromed/index_en.htm

<표 4> EU-알제리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제 1-2 조

제 1 부 정치적 협의

제 3-5 조

제 2 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제 6 조

제 1 장 제조물

제 7-11 조

제 2 장 농산물, 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제 12-15 조

제 3 장 공동규정

제 16 조-제 29 조

제 3 부 서비스무역

제 30 조 상호양해

제 31 조 국경간 서비스공급

제 32 조 상업적 소재

제 33 조 자연인의 임시적 소재

제 34 조 운 송

제 35 조 국내규제

제 36 조 정 의

제 37 조 일반규정

제 4 부 외환지급, 자본, 경쟁 및 기타 경제 규정들

제 1 장 외환지급과 자본이동

제 38 조-제 40 조

제 2 장 경쟁 및 기타 경제 규정들

제 41 조-제 46 조

제 5 부 경제협력

제 47 조 목 적

제 48 조 범 위

제 49 조 수 단

제 50 조 지역 협력

제 51 조 과학 기술 협력

제 52 조 환 경

제 53 조 산업협력

제 54 조 투자진흥과 보호

제 55 조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 56 조 법제도의 통일화

제 57 조 금융서비스

제 58 조 농업 및 수산업

제 59 조 운 송

제 60 조 정보사회와 통신

제 61 조 에너지 및 광업

제 62 조 관광 및 수공업 분야

제 63 조 통관문제의 협력

제 64 조 통계협력

제 65 조 소비자보호 협력

제 66 조

제 6 부 사회 및 문화적 문제의 협력

제 1 장 노동자

제 67 조-제 71 조

제 2 장 사회문제에 관한 협의

제 72 조

제 3 장 사회분야에 관한 협력

제 73 조-제 76 조

제 4 장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력

제77조-제78조

제7부 금융분야의 협력

제79조-제81조

제8부 사법 및 국내문제의 협력

제82조 법규 제정과 법의 지배

제83조 자연인의 이동

제84조 불법이민의 규제와 억제

제85조 법 및 사법분야의 협력

제86조 조직범죄의 억제

제87조 자금세탁의 억제

제88조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의 억제

제89조 마약 및 중독의 억제

제90조 테러의 억제

제91조 부패의 억제

제9부 기구 일반 및 최종규정

제92조-제110조

(2)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노력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이러한 제후협정들이 체결된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이르기 위해 EU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EU의 상대방들인 지중해 국가 사이의 FTA 체결이다. 이것은 이미 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무역장벽 등을 통일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의 4개국(아카디르 협정)을 2004년 2월에 체결하였고, 2006년에 완전 발효되었다.

EU 이사회는 이에 더불어, ‘범유럽 지중해 원산지 누적제도’를 창설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2005년 10월에 승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EU는 EU 가입 27개국, EFTA, 터키, 페로제도(덴마크 자치령) 등과 공유하고 있던 원산지 누적제도를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확대함으로써, 제후협정의 체결 이후 지중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제후협정에 포함된 원산지 규칙에 관한 부분을 원산지 누적제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간다. 누적제도의 도입으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FTA 체결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위와 같이 자유화되는 상품무역과는 별도로, EU는 이 국가들과의 서비스 및 투자분야의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지중해 연안 국가의 국내생산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자유화는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3. 관세동맹

EU는 현재 안도라 및 터키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안도라와의 관세동맹은 공업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제규모도 그리 크지 않지만, 터키와의 관세동맹은 공업제품과 함께 농산가공품도 그 대상이 된다. 또한 터키와의 관세동맹은 대상제품에 대해서 EU 공동관세율이 도입되어 쌍방에게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품에 대해서는 터키의 EU 가입이 전제로 공동농업정책을 채택한 후에 관세동맹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다.

EU-터키는 이미 1963년 제후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장벽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된 위원회결정(the Association Council Decision)을 통하여 양자간 관세동맹이 실현되었다. 이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EU와 터키는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한다.¹⁰⁴⁾ 다만 양자간 관세동맹이 ‘관세동맹’이라고 하면서도, 관세동맹이 가진 본래의

104)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turkey/index_en.htm

의미와는 다르게 EU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터키가 체결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EU의 FTA에 의한 우대조치가 터키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터키가 단독으로 체결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도 터키가 EU 가입에 이를 때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EU-터키 관세동맹은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터키의 EU 가입에 초점을 두고 잠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는 관세동맹과는 별도로 EU가 설정한 지중해 연안국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으로 예정된 지중해 연안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에 새롭게 EU에 가입한 키프러스를 포함한 10개국으로 EU-터키 관세동맹의 효과를 확대 적용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¹⁰⁵⁾ EU는 터키측에 위의 의무 이행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와의 일부 분야의 가입교섭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물품의 자유이동, 서비스공급의 자유, 금융서비스, 농업 지방개발, 어업정책, 운수정책, 관세동맹, 대외관계 등이다.

4. 코토누 협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FTA

(1) 코토누 협정

EU는 그동안 역사적인 배경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도서국(ACP)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로메협약(Lomé Convention)을 1975년에 체결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메협약은 과거 유럽국가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에게 EU와의 무역에서

105) 터키가 키프러스의 항공기와 선박의 국내 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으나, EU는 당초 2005년 10월 3일로 되어 있던 관세동맹 효과의 확대적용 기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하여 터키의 양보를 촉구한 바 있다.

편무적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¹⁰⁶⁾ 그러나 종래의 편무적 특혜 협정인 로메협정이 실효되면서, 정치대화, 무역 및 투자, 개발과 협력이라는 세 분야로 구성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또는 ACP-EU Partnership Agreement)을 2000년 6월에 체결하였고, 본 협정은 2003년 4월에 발효되었다.¹⁰⁷⁾ 본 협정은 2005년 재협상을 거쳐 개정되었는데, 코토누 협정의 EU 상대방은 무려 76개국에 이른다. 코토누 협정 본문의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코토누 협정 본문의 개략적인 구성

<p>제 1 편 일반규정</p> <p>제 1 장 목적, 원칙, 당사자</p> <p>제 1 절 목적과 원칙</p> <p>제 2 절 파트너십의 당사자</p> <p>제 2 편 기구규정</p> <p>제 3 편 협력전략</p> <p>제 1 장 개발전략</p> <p>제 1 절 일반적 골자</p> <p>제 2 절 지원범위</p> <p>1. 경제개발</p> <p>2. 사회 및 인력개발</p> <p>3. 지역협력 및 통합</p> <p>4. 중점 논제</p> <p>제 2 장 경제 및 무역협력</p> <p>제 1 절 목적 및 원칙</p> <p>제 2 절 신무역체제</p>
--

106) 초기에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영국, 포르투갈 등이 EU에 가입하면서 그 대상국의 수가 확대되었다.

107) http://ec.europa.eu/development/Geographical/CotonouIntro_en.cfm

제 3 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 4 절 서비스무역
 제 5 절 무역관련 분야
 제 6 절 기타 분야의 협력

제 4 편 개발금융협력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절 목적, 원칙 등
 제 2 절 금융의 범위
 제 2 장 금융협력
 제 1 절 금융자원
 제 2 절 부채 및 구조적응 지원
 제 3 절 수출이익의 단기적 변동에 대한 지원
 제 4 절 분야별 정책지원
 제 5 절 미시적 계획 및 비중앙정부 협력
 제 6 절 인도주의적 긴급지원
 제 7 절 투자 및 사적 분야 개발의 지원

제 3 장 기술협력
 제 4 장 절차 및 운영체계

제 5 편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들을 위한 일반규정
 제 1 절 일반규정
 제 2 절 최빈 ACP 국가들
 제 3 절 내륙 ACP 국가들
 제 4 절 도서 ACP 국가들

제 6 편 최종규정

코토누 협정은 개발도상국인 해당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집중하는 한편, 무역확대에 의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

인 차원에서 WTO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소그룹별 FTA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섯 가지의 지역 그룹¹⁰⁸⁾별로 무역부분에 특화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02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제4차 로메협정의 편무적인 특혜조치가 2007년 말까지 유지되므로, 양측에서 기일연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08년 1월말까지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발효가 필요하다. 발효 후 적어도 12년간은 이해기간으로 규정되어, ACP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있다.

(2) EU-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

ACP 국가 중에서 발전단계가 다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개별적으로 2004년 5월에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효시켰지만, 2000년 1월부터 이미 FTA 성격을 가진 무역자유화 부분을 미리 적용하였다.¹⁰⁹⁾ 본 FTA의 적용으로 EU가 10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95%,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2년 동안 EU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86%의 관세를 철폐한다. EU-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EU-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의 본문 구성

제 1 부 일반목적, 원칙 및 정치적 협의
 제 1 조 목적
 제 2 조 필수요소
 제 3 조 비강제
 제 4 조 정치적 협의

108)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regions/acp/plcg_en.htm

109)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southafrica/index_en.htm

제 2 부 무 역

A절 일반사항

- 제 5 조 자유무역지대
- 제 6 조 상품의 분류
- 제 7 조 기본 관세
- 제 8 조 국가세입품의 관세
- 제 9 조 관세유사요금

B절 제조물

- 제10조 정 의
- 제11조 공동체의 관세제거
- 제12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

C절 농산물

- 제13조 정 의
- 제14조 공동체의 관세제거
- 제15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
- 제16조 농산물 긴급관세조치
- 제17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가속
- 제18조 검토조항

제3부 무역관련 사항

A절 공동규정

- 제19조 국경조치
- 제20조 농산물 정책
- 제21조 국세조치
- 제22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 제23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 제2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25조 잠정수입제한조치
- 제26조 긴급수입제한절차
- 제27조 예 외

제28조 원산지규정

B절 회사설립 및 서비스공급 권한

- 제29조 GATS 의무의 재확인
- 제30조 서비스공급의 자유화
- 제31조 해상운송

C절 외환지급과 자본이동

- 제32조 외환지급
- 제33조 자본이동
- 제34조 외환지급제한

D절 경쟁정책

- 제35조 정 의
- 제36조 실 행
- 제37조 적정조치
- 제38조 국제예양
- 제39조 기술지원
- 제40조 정 보

E절 공공지원

- 제41조 공공지원
- 제42조 구제조치
- 제43조 투명성
- 제44조 검 토

F절 기타 무역관련 조항

- 제45조 정부조달
- 제46조 지적재산
- 제47조 표준 및 적합성평가
- 제48조 통 관
- 제49조 통 계

제4부 경제협력

- 제50조 총 론

- 제51조 산 업
- 제52조 투자의 진흥과 보호
- 제53조 무역증진
- 제54조 중소기업
- 제55조 정보사회 - 통신 및 정보기술
- 제56조 우편 협력
- 제57조 에너지
- 제58조 광업 및 광물
- 제59조 운 송
- 제60조 관 광
- 제61조 농 업
- 제62조 수산업
- 제63조 서비스
- 제64조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건강의 보호

제5부 개발 협력

A절 일 반

- 제65조 목 적
- 제66조 우선사항
- 제67조 적합한 수혜자
- 제68조 수단과 방법
- 제69조 계 획
- 제70조 계획수립, 준비, 평가
- 제71조 금융제의 및 결정
- 제72조 금융합의

B절 실 행

- 제73조 계약자 및 공급의 적합성
- 제74조 계약당국
- 제75조 정부조달
- 제76조 일반적 규제와 조건

- 제77조 분쟁의 해결
- 제78조 과세 및 관세합의
- 제79조 책임자
- 제80조 국가당국자 및 지급대리인
- 제81조 위원장
- 제82조 감시 및 평가

제6부 기타 분야의 협력

- 제83조 과학 및 기술
- 제84조 환 경
- 제85조 문 화
- 제86조 사회문제
- 제87조 정 보
- 제88조 신문 및 방송
- 제89조 인적자원
- 제90조 마약 및 자금세탁의 억제
- 제91조 정보보호
- 제92조 보 건

제7부 금융분야의 협력

- 제93조 목 적
- 제94조 용 자
- 제95조 대 출
- 제96조 지역협력

제8부 최종규정

- 제97조 기구의 설치
- 제98조 세금감면 조항
- 제99조 기 간
- 제100조 비차별
- 제101조 지역적 적용

제102조 미래개발
제103조 검 토
제104조 분쟁해결
제105조 양자간 협정에 관한 조항
제106조 개정조항
제107조 부속서
제108조 언어 및 공식협정문
제109조 발 효

EU-남아프리카공화국 제휴협정의 부속서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의 내용은, 양자의 제조물과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품목리스트들과 경쟁분야와 공공지원 분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포도주 및 포도종자에 관한 양자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한 서신의 내용도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5. 중남미 지역국가들과의 협정

1990년대까지 EU 확대와 주변국들과의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EU는, 1994년 NAFTA의 발효와 2000년의 미국-칠레 FTA 협상에 따라 멕시코와 칠레로 진출하는 EU 기업이 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이 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EU는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고자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멕시코 및 칠레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본 제휴협정은 정치대화, 경제협력, 무역자유화를 기등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정부조달,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과 분쟁해결 체계의 협력 등 폭넓은 분야 대상으로 한다.

(1) EU-멕시코 제휴협정

EU-멕시코 제휴협정은 1998년 11월에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0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FTA 성격의 무역자유화 부분이 발효되었다. 특히 공업제품에 대하여 멕시코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관세는 2003년 1월까지 철폐, EU 제품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과세는 2007년 1월까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전체적인 제휴협정은 2000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협정이 2001년 3월에 발효되었다. EU-멕시코 제휴협정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표 7 > EU-멕시코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제 1 부 내용과 범위
제 1 조 협정의 기초
제 2 조 내용과 범위
제 2 부 정치적 협의
제 3 조
제 3 부 무역
제 4 조 목 적
제 5 조 상품무역
제 6 조 서비스무역
제 7 조
제 4 부 자본이동과 외환지급
제 8 조 자본이동과 외환지급
제 9 조

제 5 부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 및 기타 무역관련 규정

- 제10조 정부조달
- 제11조 경 쟁
- 제12조 지적재산 및 산업, 상업적 재산

제 6 부 협 력

- 제13조 협력과 경제적 문제에 관한 협의
- 제14조 산업협력
- 제15조 투자진흥
- 제16조 금융서비스
- 제17조 중소기업의 협력
- 제18조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 제19조 통 관
- 제20조 정보화 사회
- 제21조 농업분야의 협력
- 제22조 광업분야의 협력
- 제23조 에너지 협력
- 제24조 운송분야의 협력
- 제25조 관광분야의 협력
- 제26조 통계분야의 협력
- 제27조 정 부
- 제28조 마약 밀매, 자금세탁 및 의약품남용 억제에 관한 협력
- 제29조 과학기술협력
- 제30조 훈련 및 교육분야의 협력
- 제31조 문화적 협력
- 제32조 방송분야의 협력
- 제33조 정보 및 통신의 협력
- 제34조 환경 및 자연자원에 관한 협력
- 제35조 수산업의 협력
- 제36조 사회문제와 빈곤분야의 협력

- 제37조 지역협력
- 제38조 난민에 관한 협력
- 제39조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협력
- 제40조 소비자보호 협력
- 제41조 자료보호에 관한 협력
- 제42조 보 건
- 제43조 미래개발조항
- 제44조 협력자원

제 7 부 기구구조

- 제45조 합동회의
- 제46조 합동위원회
- 제47조-제48조
- 제49조 기타 특별위원회
- 제50조 분쟁의 해결

제 8 부 최종규정

- 제51조 정보보호
- 제52조 국가안보규정
- 제53조-제54조
- 제55조 당사국의 정의
- 제56조 영토적 적용
- 제57조 기 간
- 제58조 의무의 이행
- 제59조 공식협정문
- 제60조 발 효

이밖에, EU-멕시코 제후협정은 본문 제51조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2) EU-칠레 제휴협정

칠레와의 제휴협정은 2000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어 2002년 11월에 체결되었으며, 2005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서비스·투자분야를 제외한 FTA 성격의 무역관련 조항은 2003년 2월부터 잠정 발효하였다. 수입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EU가 칠레 원산지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발효로부터 3년 후, 4년 후, 7년 후, 10년 후의 5단계로 나누고, 칠레는 EU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협정발효로부터 5년 후, 7년 후, 10년 후의 4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EU-칠레 제휴협정 본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EU-칠레 제휴협정 본문의 주요 구성

제 1 부 일반 및 기구관련

제 1 장 협정의 내용 및 범위

- 제 1 조 원 칙
- 제 2 조 목적과 범위

제 2 장 기구의 골격

- 제 3 조 합동협의회
- 제 4 조 구성 및 절차규범
- 제 5 조 결정권한
- 제 6 조 합동위원회
- 제 7 조 특별위원회
- 제 8 조 정치적 협의
- 제 9 조 합동의원위원회
- 제 10 조 합동토의위원회
- 제 11 조 시민단체

제 2 부 정치적 협의

- 제 12 조 목 적
- 제 13 조 구 조
- 제 14 조 외교 및 안보정책의 협의
- 제 15 조 테러리즘에 관한 협의

제 3 부 협력

- 제 16 조 일반목적

제 1 장 경제협력

- 제 17 조 산업협력
- 제 18 조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의 절차에 관한 협력
- 제 19 조 중소기업의 협력
- 제 20 조 서비스 협력
- 제 21 조 투자의 진흥
- 제 22 조 에너지 협력
- 제 23 조 운 송
- 제 24 조 농업 및 위생조치의 협력
- 제 25 조 수산업
- 제 26 조 통관분야의 협력
- 제 27 조 통계 협력
- 제 28 조 환경 협력
- 제 29 조 소비자 보호
- 제 30 조 정보 보호
- 제 31 조 거시경제에 관한 협의
- 제 32 조 지적재산권
- 제 33 조 정부조달
- 제 34 조 관광분야의 협력
- 제 35 조 광업분야의 협력

제 2 장 과학기술정보사회

- 제36조 과학기술협력
- 제37조 정보사회, 정보기술, 통신

제 3 장 문화교육 및 방송

- 제38조 교육과 훈련
- 제39조 방송분야의 협력
- 제40조 정보교환 및 문화협력

제 4 장 공중행정 및 기구간 협력

- 제41조 공중행정
- 제42조 국제기구간 협력

제 5 장 사회협력

- 제43조 사회협약
- 제44조 사회협력
- 제45조 성(性) 관련 협력

제 6 장 기타 협력분야

- 제46조 불법이민 관련 협력
- 제47조 마약 및 조직범죄 관련 협력

제 7 장 일반규정

- 제48조 협력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가
- 제49조 지역간 협력 및 지역통합
- 제50조 3자간 혹은 양자간 협력
- 제51조 미래개발조항
- 제52조 공동관계내의 협력
- 제53조 자원
- 제54조 협력분야에서 합동위원회의 특정 역할

제 4 부 무역 및 무역관련 문제

제 1 장 일반규정

- 제55조 목 적

제56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제 2 장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 제57조 목 적

제 1 절 관세의 제거

1. 공동규정

- 제58조 범 위
- 제59조 관 세
- 제60조 정 지
- 제61조 상품의 분류
- 제62조 수수료 및 기타 과세

2. 관세의 제거

2.1. 제조물

- 제64조 범 위
- 제65조 칠레 원산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 제66조 EC 원산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2.2. 수산물

- 제67조 범 위
- 제68조 칠레원산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
- 제69조 EC 원산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

2.3. 농산물 및 농산가공물

- 제70조 범 위
- 제71조 칠레 원산지 수입 농산물 및 농산가공물에 대한 관세
- 제72조 EC 원산지 수입 농산물 및 농산가공물에 대한 관세
- 제73조 농산물 및 농산가공물에 관한 긴급관세
- 제74조 발전조항

제 2 절 비관세조치

1. 공동규정

- 제75조 범 위

제76조 수량제한의 금지

제77조 내국세 및 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2.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78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3. 통관 및 관련 문제

제79조 통관 및 관련 문제

제80조 관세평가

제81조 통관 협력 및 원산지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82조 특혜조치의 실행

4.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의 절차

제83조 목 적

제84조 범 위

제85조 정 의

제86조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87조 본 협정에 따른 특별조치

제88조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위원회

5. 위생 및 검역조치

제89조 위생 및 검역조치

6. 포도주 및 종자

제90조 포도주 및 종자

제 3 절 예 외

제91조 일반예외조항

제92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93조 수량부족조항

제 3 장 서비스 무역 및 회사의 설립

제94조 목 적

제 1 절 서비스

1. 일반규정

제95조 범 위

제96조 정 의

제97조 시장접근

제98조 내국민대우

제99조 특정이행계획

제100조 검 토

제101조 자연인의 이동

제102조 국내규제

제103조 상호인증

제104조 전자상거래

제105조 투명성

2. 국제해상운송

제106조 범 위

제107조 정 의

제108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3. 통신서비스

제109조 정 의

제110조 규제기관

제111조 서비스공급

제112조 주공급자

제113조 내부관계

제114조 회귀자원

제115조 국제서비스

제 2 절 금융서비스

제116조 범 위

제117조 정 의

제118조 시장접근

제119조 내국민대우

- 제120조 특정이행계획
- 제121조 신규 금융서비스
- 제122조 금융서비스 분야의 정보처리
- 제123조 금융서비스 분야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규제
- 제124조 비밀정보
- 제125조 예방조치
- 제126조 인 증
- 제127조 금융서비스 특별위원회
- 제128조 협 의
- 제129조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

제 3 절 회사의 설립

- 제130조 범 위
- 제131조 정 의
- 제132조 내국민대우
- 제133조 규제권한
- 제134조 최종규정

제 4 절 예 외

- 제135조 예 외

제 4 장 정부조달

- 제136조 목 적
- 제137조 범 위
- 제138조 정 의
- 제139조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
- 제140조 상쇄금지 및 국내특혜
- 제141조 평가조항
- 제142조 투명성
- 제143조 제공절차
- 제144조 선택적 제공

- 제145조 기타 절차
- 제146조 제공의 품질
- 제147조 통지의 공포
- 제148조 제공서류
- 제149조 기술적 표시
- 제150조 시간제한
- 제151조 협 상
- 제152조 제출, 영수증 및 제공의 개시
- 제153조 계약의 제시
- 제154조 계약체결 정보
- 제155조 입찰
- 제156조 정보기술
- 제157조 협력과 지원
- 제158조 통계적 보고
- 제159조 범위의 변동
- 제160조 향후 협상
- 제161조 예 외
- 제162조 검토 및 실행

제 5 장 외환지급 및 자본이동

- 제163조 목적 및 범위
- 제164조 외환계좌
- 제165조 자본계좌
- 제166조 예외 및 긴급제한제도
- 제167조 최종규정

제 6 장 지적재산권

- 제168조 목 적
- 제169조 범 위
- 제170조 지적재산권 보호

- 제171조 검 토
- 제 7 장 경 쟁**
- 제172조 목 적
- 제173조 정 의
- 제174조 통 보
- 제175조 실행조치의 조화
- 제176조 일방의 이해관계가 타방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의 협의
- 제177조 정보의 교환과 비밀
- 제178조 기술지원
- 제179조 공공사업, 관선의 독점을 포함한 특별하고 독점적인 사업
- 제180조 분쟁의 해결
- 제 8 장 분쟁의 해결**
- 제 1 절 목적 및 범위**
- 제181조 목 적
- 제182조 범 위
- 제 2 절 분쟁의 회피**
- 제183조 협 의
- 제 3 절 분쟁해결절차**
- 제184조 절차의 개시
- 제185조 중재인의 선임
- 제186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 제187조 중재패널규제
- 제188조 승 낙
- 제 4 절 일반규정**
- 제189조 일반규정
- 제 9 장 투명성**
- 제190조 협의 및 정보교환

- 제191조 투명성증대에 관한 협력
- 제192조 공 개
- 제10장 본 협정으로 설치된 기구의 무역관련 임무**
- 제193조 특정임무
- 제11장 무역분야의 예외**
- 제194조 국가안전조항
- 제195조 외환지급위기
- 제196조 과 세
- 제 5 부 최종규정**
- 제197조 당사국의 정의
- 제198조 발 효
- 제199조 기 간
- 제200조 의무의 이행
- 제201조 미래개발
- 제202조 정보보호
- 제203조 국가안보조항
- 제204조 적용영역
- 제205조 공식협정문
- 제206조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

EU-칠레 제후협정에서, 양자는 본문만 206조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을 체결하였다. 그 이유는 EU만큼이나 칠레 역시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되도록 상세한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협정문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EU와 칠레의 주요 생산품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3) EU-MERCOSUR의 협력

EU는 멕시코, 칠레와의 제휴협정과는 별도로 중남미 지역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MERCOSUR와 정치 및 경제 제휴협정 (Political and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U와 MERCOSUR는 보다 광범위한 FTA 또는 이러한 성격을 포함한 제휴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밖에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12월에 중미국가¹¹⁰⁾ 및 안데스 공동체와 각각 FTA 성격을 포함한 제휴협정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이사회에 제안하였다. EU가 이 두 지역에 대하여 제휴협정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EU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세계적인 공통가치의 방위, 다국간 상호 자유무역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두 지역과의 정치적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기타 지역들과의 협력

(1)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협력

EU의 확대와 서발칸 지역까지 넓어진 영향력으로, CIS 국가들과의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2003년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들과의 인력, 물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즉 동유럽까지 확대된 EU가 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등을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유사한 정책으로 취급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가 여기에 추가되었다.

110)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가 여기에 해당한다.

EU는 이러한 CIS 국가들과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파트너십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수준의 안정화 제휴협정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무역에 있어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EU-몰도바 제휴협정 본문의 간략한 구성내용이다.

<표 9> EU-몰도바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제 1 부 일반원칙
제 1 조-제 5 조
제 2 부 정치적 협의
제 6 조-제 9 조
제 3 부 상품무역
제 10조-제 22조
제 4 부 사업과 투자관련 규정
제 1 장 노동조건
제 23조-제 28조
제 2 장 회사설립과 경영관련 조건
제 29조-제 35조
제 3 장 국경간 서비스공급
제 36조-제 39조
제 4 장 일반규정
제 40조-제 46조
제 5 부 외환지급 및 자본
제 47조
제 6 부 경쟁, 지적/산업/상업적 재산권 보호, 법제분야의 협력
제 48조-제 50조

제 7 부 경제 협력

제51조-제76조

제 8 부 문화 협력

제77조

제 9 조 금융 협력

제78조-제81조

제10조 기구, 일반 및 최종조항

제82조-제106조

EU는 CIS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를 별도로 취급하여 새로운 FTA 체결 후보대상으로 보고 있다. 1997년 EU와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파트너십 협력협정은 1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양자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자 본 협정의 기간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매년 갱신하기로 정하였다.¹¹¹⁾ EU와 러시아의 FTA 체결과 협력은 러시아의 WTO 가입과 기타 문제들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서남아시아 GCC 국가들과의 협력

EU는 1990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6개국 이 참여하는 걸프협력회의(GCC)¹¹²⁾와 양 지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자가 1989년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협

111) 2006년 11월의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로부터 약 1년간에 식육류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폴란드가 이 금지조치가 우선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위원회에 대한 협상의 권한 부여를 거부하였다.

112) Gulf Cooperation Council(GCC)은 1981년 출범하여 회원국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는

상이 시작된 것이다. EU 시장에서 GCC의 상품은 EU 일반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있다.¹¹³⁾

원래 2006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FTA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EU와 GCC간 FTA 체결에 이처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는, 양 지역간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FTA 안에 인권, 정치개혁, 반테러협력 등 경제 범위를 벗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포함됨으로써 양 지역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제 3 절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새로운 FTA 정책

1.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

(1)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EU의 지역주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EU 자체도 오랜 기간동안 발전해온 지역주의의 한 형태이다. EU가 체결해온 지역무역협정은, 그 역사와 상황변화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U 주변국들과 체결한 지역무역협정들은 주로 EU 회원국의 확대를 목표로 자유무역을 실현하거나 통합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격이 많았다. 이러한 형태의 협정들은 FTA라는 형태보다는 FTA의 성격을 포함하고 그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대방의 EU 가입준비과정에서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등이 체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13) EU 시장에 수출되는 GCC 상품의 약 70% 정도가 석유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통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긴밀도를 기준으로 특징을 고려하여 보면, 기본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에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으로, 다시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수준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¹¹⁴⁾

그러나 EU의 확대와 큰 관련이 없는 상대방과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제적인 의미가 두드러진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제휴협정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다 FTA에 가까운 형태로서 양자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들어 EU가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과 구상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이전보다 뚜렷하게 좁은 의미의 FTA와 그 성격과 범위가 유사하다.

(2) 기본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무역협정

EU는 역사적으로 본격적인 지역무역협정의 개념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WTO 출범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역무역협정보다 WTO를 비롯한 다자주의 무역규범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외무역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다만 EU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주력하였던 기간에도 EU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FTA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EU 역시

114) 강문성 권경덕 김양희 김홍종 이종화 정인교,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66면.

세계의 주요 지역 및 교역대상국들과의 FTA를 체결하거나 FTA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전까지 진행되어오던 지역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대상국도 아시아 지역 등으로 넓히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EU는 EU 자체의 확대와 함께 지중해연안국, ACP, 멕시코, 칠레, 남아공, 메르코수르,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을 포함하여 ASEAN, Andean공동체, 중미6개국 등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다.

또한 EU의 지역무역협정 정책에 있어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한 FTA 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혜무역을 부여하였던 ACP와의 로메협약 체계를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코트누협정 체계로 대체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ACP 국가들이 그동안 EU 시장에서 누리던 편무적 특혜무역은 종료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ACP 회원국도 EU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체결하였던 기존의 협정이 상호주의적 개방의 성격이 짙은 Euro-Mediterranean Agreements협정들로 전환되면서,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목표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지역무역협정

EU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 안보, 사회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전략적 차원에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적으로 볼 때, EU 자체의 설립취지가 단순히 경제적인 통합과 발전을 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이 크게 강조된 다수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지역무역협정과 다른 모습이다.

EU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들은 북아프리카, 중동, 지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안보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추진되었다. 이와 동시에 FTA 성격의 경제적 협정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만성적인 유럽지역으로의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적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EU의 기술표준, 원산지규정, 유로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유럽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적도 있다.¹¹⁵⁾

EU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은 인종차별 종식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무역투자의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유럽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EU-GCC FTA 협상에서도 역시 경제적 목적 이외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목적까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EU의 정책적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와의 지역무역협정은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 시장에서 유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 추진되었다.¹¹⁶⁾ MERCOSUR와의 FTA 협상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FTAA의 창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MERCOSUR가 남미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시장을 형

115) 이러한 전략적 목적은, 1980년대부터 차츰 시작된 미국의 지역무역협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확대를 노리는 전략에 방어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16) 특히 자동차 등 유럽산 상품의 북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한 측면이 강하다.

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과의 FTA는 EU에 의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으나, 남미 농산물의 EU에 대한 시장접근 문제, 남미의 통신산업 개방 문제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4) 상대방의 국내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지역무역협정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은 단순히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평면적 FTA가 아닌, 비관세 장벽 철폐는 물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국의 국내제도의 상당한 개선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그동안 EU가 체결해온 지역무역협정이 EU의 확대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EU의 확대와 관련이 적은 새로운 상대와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EU는 FTA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통합(Deeper Integration)의 정책목표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¹⁷⁾

EU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전반적인 경제제도,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및 표준,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개선할 경우에 경제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EU가 기대하는 이러한 상대국 제도의 변화는, 정책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될수록 유럽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투자와 무역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상대국과의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을 통해 WTO 등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규범 및 제도에 관한 논의를 EU가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EU의 지역무역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여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협상과

117) Pascal Lamy, supra, pp. 1399-1413 참고.

정에서 유럽의 지명과 관련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도주 상표에 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해당 상표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였던 EU의 입장으로 위기가 발생한 바 있었다.¹¹⁸⁾ MERCOSUR와의 협상에서도 EU 농업분야 보호를 목적으로 농업시장 개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여, 이미 대 EU 총수출의 55%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MERCOSUR와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¹¹⁹⁾

2. 아시아 국가와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추진

EU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부진하면서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상대로 아시아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GCC, 인도, ASEAN, 한국과의 FTA 추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것은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 이후 EU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국가들과 진행하는 새로운 모습의 지역무역협정인 셈이다.

EU는 중국의 급성장을 주목하면서 잠정적인 FTA의 상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방과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EU가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 및 사회적 측면까지 중시된다는 사정이 있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동아시아 국가와 진행하는 첫 FTA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EU측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FTA가 중국과의 FTA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18) 협상 결렬을 우려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련 포도주 생산자에 대해 구조조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FTA 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119) 이 문제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자, 내부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교역자유화를 선호하는 영국 등과 농업분야에 이해관계를 지닌 프랑스, 벨기에 등이 합의하여, EU는 일부 제한적인 농업부문의 개방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하는 EU의 FTA는 상대국이 처한 경제발전수준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가 EU의 다른 지역무역협정들과는 비교적 경제적인 문제에 중심을 둘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 그동안 EU가 체결하여왔던 지역무역협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EU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던 이유가 과거 식민지나 이웃 국가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해서,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이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쌍무적인 특혜를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과의 FTA는 이러한 EU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제 5 장 한 - EU FTA의 추진

제 1 절 한국의 FTA 정책과 체결된 FTA

1. FTA 정책의 추진

(1) 정책의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¹²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FTA 체결을 비롯한 이른바 지역주의 현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즉, 역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은 한국기업들의 해당 시장의 접근을 점차 어렵게 하였고, WTO 규범을 통하여 이러한 역외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WTO의 출범 이후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대처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TA가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WTO 보다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 스스로 FTA의 체결 등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¹²¹⁾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은,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120) 즉,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21)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30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많은 국내 기업들은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제휴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FTA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수단으로 평가되었다.¹²²⁾

(2) 대외경제조정위원회와 FTA 정책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한 것은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처음이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국내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해당지역에서의 비중, FTA의 체결의사 등을 감안하여 칠레와의 FTA 협상을 우선 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칠레와의 무역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칠레가 중남미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중에서 일부 취약품목은 FTA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한편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를 진행하면서 주요 무역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협상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FTA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FTA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FTA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3) FTA 정책의 추진과 전략

정부는 칠레 이외에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여러 국가들과 함께 FTA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실

122) 김봉철, 앞의 책, 155 - 156면.

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한-칠레 FTA¹²³⁾ 체결 이후 한-싱가포르 FTA,¹²⁴⁾ 한-EFTA FTA¹²⁵⁾가 이미 발효되었고,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0여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FTA 전략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상호 상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하는 것이다.¹²⁶⁾ 넷째,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¹²⁷⁾

2. 한-칠레 FTA

(1) 협정의 체결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칠레가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

123) 2004년 4월 발효.

124) 2006년 3월 발효.

125) 2006년 9월 발효.

126)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127)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의하면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약 4년 동안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각각 4월과 6월에 개최된 작업반 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 산티아고에서 제 1 차 협상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¹²⁸⁾

2002년 9월부터는 제네바에서 상품양허안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10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 6 차 협상을 끝으로 칠레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서명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안은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등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2) 협정의 의미

칠레와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칠레와의 FTA는,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통합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 체제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도, 한국이 지역주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적으로 상대국을 선택하여 FTA를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칠레는 우리와의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제 3 국이 남미시

128)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었다.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중에서 377개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고, 모두 1432개 품목 중에서 15.5%인 222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제거하고 37.7%인 539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를 제거하며, 나머지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두거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도록 하였다. 칠레는 우리의 양허안이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제거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¹²⁹⁾ 따라서 칠레와의 FTA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빠르게 남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쌀, 사과, 배 등을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관세율이 높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칠레 수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칠레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많은 FTA 또는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인접한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제거와 역내무역확대를 추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어 배타성이 축소되는 최근의 현상은,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의 연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협력체의 규범과 WTO 규범의 조화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칠레의 FTA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역을 달리하는 아시아와 남미지역 국가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FTA이라는 점에서 국제경제법적인 가치가 크다.

129) 칠레는 볼리비아와 함께 이후 준회원 자격으로 MERCOSUR와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Kim, Dong-Hoon/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pp. 332-333]. 최근에는 멕시코가 준회원국이 되었다[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p. 10].

(3) 협정의 구조

칠레와의 FTA 규범은 전체 6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최초조항'과 '일반적 정의'로 나누어지며, 여기에서는 협정 전반에 적용되는 총론적인 일반조항을 두었다.

제 2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이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과 부속서, '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 등 일반적인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 조치'와 그 부속서로 이루어진다.

제 3부는 '투자 및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다. '투자일반'에 관한 규정과 부속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부속서,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부속서,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관한 내용과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 4부는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다. '경쟁규범', '정부조달'과 부속서, '지적재산권'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5부는 '행정 및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투명성', '협정의 운영'과 그에 관한 부속서, 양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밖에 제 6부에서는 예외규정과 최종조항을 두고 있다.¹³⁰⁾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¹³¹⁾

130)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

131)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6-17면.

<표 10>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p>제 1 부 제 1 장 : 최조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p> <p>제 2 부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우리측 양허안/칠레측 양허안) 제 4 장 : 원산지 규정 - 부속서 제 5 장 : 통관 절차 제 6 장 :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 장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 8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p> <p>제 3 부 투자 및 서비스 제 10 장 : 투자 - 부속서 제 11 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제 12 장 : 전기통신 - 부속서 제 13 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p> <p>제 4 부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제 14 장 : 경쟁</p>

<p>제 15 장 : 정부조달 - 부속서 제 16 장 : 지적재산권 - 부속서</p> <p>제 5 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제 17 장 : 투명성 제 18 장 : 협정의 운영 - 부속서 제 19 장 : 분쟁해결 - 부속서</p> <p>제 6 부 기타 규정 제 20 장 : 예외 제 21 장 : 최종 조항</p>
--

3. 한-싱가포르 FTA

(1) 협정의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측이 우리 정부에 FTA 체결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 WTO 소규모 각료회의시 개최된 양국간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 관 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되었다.¹³²⁾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

13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참고.

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 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본 협정안은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는 가서명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다.¹³³⁾ 이 협정은 2005년 12월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6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2) 협정의 의미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의 두 번째 FTA가 되었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칠레와의 FTA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FTA 체결을 통해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체계를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이 동남아 허브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강화하는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되어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비하여 그 대상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FTA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13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1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싱가포르 FT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에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¹³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해외 관료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WTO 이행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¹³⁵⁾ 이 조항이 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쌀과 시멘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미국이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국제거래라고 하여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¹³⁶⁾

(3) 협정의 구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22장, 그리고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분량만 약 1,6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칠레와의 FTA 규정에 비교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들이 많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¹³⁷⁾

134) 제 4 장 원산지 규칙에 대한 부속서 제4.3조.

135) 본법 제 5 조는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국가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136) 서헌재,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30면 참조.

137)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표 11>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구성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 관세철폐계획

제 4 장 원산지 규칙
 -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기준
 - 부속서 : 4.3조(개성공단관련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 4.4조(역외가공)에서 규정된 상품

제 5 장 : 통관절차
 -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관세접촉선

제 6 장 : 무역구제

제 7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8 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부속서 :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제 9 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 현재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제 9 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 부속서 : 전문직 서비스

제10장 : 투 자

제11장 : 전기통신

제12장 : 금융서비스

- 부속서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 금융서비스활동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 전자상거래

제15장 : 경 쟁

제16장 : 정부조달
 - 부속서 : 정부조달 범위
 - 부속서 : 정부조달 이행

제17장 : 지적재산권

제18장 : 협 력
 - 부속서 : 협력(세부분야별 협력)

제19장 : 투명성

제20장 : 분쟁해결
 - 부속서 : 모범 절차규칙

제21장 : 예 외

제22장 : 행정 및 최종조항

일반조항과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제 1 장과 제 2 장을 제외한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 3 장부터 제11 장까지는 각각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밖에, 제12장부터 제20장까지는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21장과 제22장은 예외와 행정 및 최종조항이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한-EFTA FTA

(1) 협정의 체결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EFTA와의 FTA는, 한-칠레 FTA가 발효될 무렵인 2004년 그 추진타당성에 대한 산 관 학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것에서 출발한다. 2005년 1월부터 EFTA와의 FTA 체결을 위한 네 차례의 공식협상이 개최되었고, 협상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 같은 해 7월 중국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법적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되었다. 즉, 2006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에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2) 협정의 의미

한-EFTA FTA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FTA이다. 한-EFTA FTA는 이전의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와는 달리 4개국이 모인 지역경제협력체의 FT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³⁸⁾ 또한 EFTA는 비교적 큰 규모의 선진경제권이며,¹³⁹⁾ 양측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FTA의 상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한-EFTA FTA를 통해서 유럽지역의 본격적 진출을 위한 규범적 틀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138) 이에 따라서 각 EFTA 구성국들의 상황에 맞춘 양자간 협정들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 협정문 자체의 구조도 복잡하다.

139) 2004년 현재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 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평균 3만 2,979달러 수준이다.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럽시장에 국산 제품의 수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EU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경제권인 EFTA에 대한 진출이 EU시장 진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한-EFTA FTA 경험이 EU와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¹⁴⁰⁾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WTO 및 다자주의 차원의 협상에 대비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 도입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즉, EFTA와의 FTA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다자주의 협상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제거하고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비교적 우리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인 EFTA로부터의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밖에 한-EFTA FTA는,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그 내용에 반영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의 확보에도 기여하였다.¹⁴¹⁾

(3) 협정의 구조

한-EFTA의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10개 장, 부속서 13개, 그리고 농업 및 투자와 관련한 별도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협정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산

14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2면.

141)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규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87면.

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 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 범위, 어류 및 수산물, 통신서비스 양허표, 상호 인정,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최혜국대우 예외조항, 정부조달에 대한 접촉선,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¹⁴²⁾

<표 12> 한-EFTA FTA 협정문의 구성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상품 무역

- 부속서 I :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 부속서 II : 지리적 적용
- 부속서 III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IV : 가공농산물
- 부속서 V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 부속서 VI : 관세철폐 유형

제 3 장 : 서비스 무역

- 부속서 VII :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VIII :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
- 부속서 IX : 상호 인정
- 부속서 X : 통신서비스
- 부속서 XI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142)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제 4 장 : 금융서비스

제 5 장 : 경 쟁

제 6 장 : 정부조달

- 부속서 XII : 정부조달 접촉선

제 7 장 : 지식재산권

- 부속서 XIII : 지식재산권 세부사항

제 8 장 : 조직규정

제 9 장 : 분쟁해결

제10장 : 최종조항

- 공동선언 (관세인하 일정 관련)
- 의료기기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으로 나누어진 별도의 협정문들은, 농업과 관련 하여 한-아이슬란드, 한-노르웨이 및 한-스위스의 양자 농업협정, 그리고 한-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사이의 투자협정문¹⁴³⁾이다.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문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¹⁴⁴⁾

<표 13> 한-EFTA 국가간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의 구성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대한민국의 유보조항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유보조항
- 부속서 III : 리히텐슈타인의 유보조항
- 부속서 IV : 스위스의 유보조항

143) EFTA와의 투자협정은 1971년에 한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투자협정을 대체한다.
144)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 137면.

- 부속서 V : EFTA 당사국의 유보조항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아이슬란드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II :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EFTA에 대하여 99.1%의 상품을 양허(공산품, 수산물)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이 발효되면서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공산품은 100%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¹⁴⁵⁾ 반면에 EFTA는 한국산의 모든 품목(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산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EFTA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자협상으로 상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한 것이 특징이다.¹⁴⁶⁾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145) 한국은 9,404개 공산품 전품목에 대하여 100%양허하였으며, 섬유관 등 목재, 보일러, 유기 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146) 우리의 1,451개 농산물 중에서 스위스가 34%, 노르웨이가 46%, 아이슬란드는 58%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반면에 EFTA측의 양허율은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수준이다. EFTA측은 우리의 관심품목인 김치, 소주, 쌀발효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양허하였고, 우리는 민감품목 중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되되, 치즈 포도주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제출되었던 제 2 차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하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건전성 조치, 분리된 분쟁해결 절차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통신서비스는 시장접근과 관련 내용을 별도 부속서에 규정하였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양측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방송콘텐츠를 유럽시장에 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건전성 조치, 수용 및 보상, 투자 관련 분쟁해결절차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싱가포르 FTA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되, 자유화 대상 중에서 방위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투자 농림축산업 항공산업 전력 가스 원자력 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밖에, 경쟁분야에서는 양측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당국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준수하며, 제 3 국에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였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는 협정발효 3년 후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 및 중재패널의 구성과 운영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5. 한-ASEAN 상품무역분야 FTA

(1) 협정의 체결

한-ASEAN FT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가 2004년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양측은 경제자유화가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 투자 분야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ASEAN FTA 제 1차 협상은 2005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ASEAN 회원국을 오가며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과 상품협정문에 관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2005년 12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은 한국과 한-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ASEAN FTA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는 한-ASEAN FTA의 타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12월 13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6년에 개최된 9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양허안과 원산지규정 중 나머지 쟁점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특혜관세 부여 문

제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도 개시되었다. 2006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1차 한-ASEAN FTA 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는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하였다.¹⁴⁷⁾ 본 협정은 2007년 4월 2일 국회절차를 통과하였고, 6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2) 협정의 의미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ASEAN FTA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다.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 해외투자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한-ASEAN FTA는 ASEAN 지역에서 중국 또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것이다.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2005년부터 발효되었다.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무역자유

147) 태국은 제외.

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한-ASEAN FTA의 경우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중국과 비슷한 소득을 얻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ASEAN FTA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ASEAN FTA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전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가 인정되고 있으나,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를 가지고 지니기 때문에 더욱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칠레 FTA를 제외한 이후의 모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¹⁴⁸⁾ 따라서 향후 FTA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개성공단 특별조항이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협정의 구조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EFTA FTA와 유사하게 양자간 협정인 동시에 복수국간 협정이 된다. 그러나 ASEAN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협상방식을 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기본협정문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차례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¹⁴⁹⁾

148)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49) 중국 역시 ASEAN과의 FTA에서 비슷한 방식을 취하였다. 중국은 상품무역협정

기본협정은 한-ASEAN FTA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면서, 협정의 법적 적용범위 및 다른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ASEAN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와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야별 협상대상, 협상목표, 협상시한, FTA 이행기구 등 FTA의 기본골격을 규정하면서 WTO 협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협상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본협정은 서비스 투자 협상의 일정과 타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한-ASEAN FTA 완료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협정은 총 19개 분야의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부속서가 기본협정문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협정은 2005년 12월 한국과 ASEAN 정상들이 분쟁해결제도협정과 경제협력부속서와 함께 서명하였다. 기본협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4> 한-ASEAN 기본협정의 구성

<p>- 제 1 장 총 칙</p> <p>제1.1조 목 적</p> <p>제1.2조 정 의</p> <p>제1.3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p> <p>제1.4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p> <p>- 제 2 장 자유화</p> <p>제2.1조 상품무역</p> <p>제2.2조 서비스무역</p> <p>제2.3조 투 자</p> <p>제2.4조 최혜국 대우</p>
--

문에 서명한 후 서비스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월에 서비스 투자협정에 합의하였다.

- 제 3 장 경제협력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제3.2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4.1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 제 5 장 최종조항

제5.1조 분쟁해결

제5.2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5.3조 기본협정의 이행

제5.4조 사무국 및 접촉선

제5.5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제5.6조 개정

제5.7조 기탁처

제5.8조 발 효

분쟁해결제도협정은 한-ASEAN FTA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 집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협정은 당사국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패널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보상조치, 중재패널의 판정에 대한 이행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 21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된 분쟁해결제도협정은 중재패널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한-ASEAN FTA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판정결과 이행을 위한 강한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속서는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경제협력분야 부속서는 총 19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통관절차, 무역 및 투자의 진흥과 같이 교역 원활화를 위한 경제협력분야 외에도 한국이 ASEAN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

영화, 천연자원, 에너지, IT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한 부속서’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한 부속서’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 등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협정문의 개괄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 한-ASEAN 상품무역 FTA의 구성

제 1 조 정 의

제 2 조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제 3 조 관세 인하 및 철폐

-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제 4 조 투명성

제 5 조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 6 조 양허의 수정

제 7 조 WTO 원칙

제 8 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0조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 일반적 예외
제12조 안보상의 예외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제14조 기구에 관한 합의
제15조 검 토
제16조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7조 개 정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19조 분쟁 해결
제20조 기탁처
제21조 발 효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나열한 것으로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유연한 관세철폐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민감품목군은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로 나누어지며,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한국과 ASEAN 선발 6개국 및 베트남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ASEAN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한국의 경우 ASEAN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발전 단계가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총 관세품목의 10%를 넘지 못한다. 초민감품목은 다시 관세인하의 폭, 최소수입량, 그리고 제외 품목 등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¹⁵⁰⁾

15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EFTA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

6. 한-미 FTA

(1) 협정의 체결

한국과 미국은 2006년 2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여 약 16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에 관한 정부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중장기적 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계획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양국 사이의 타당성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5년부터는 협상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2005년 가을부터는 양국의 통상장관회의를 통해서 FTA의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2006년 6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공식협상이 진행되었다.¹⁵¹⁾ 양국의 FTA가 서로의 무역, 경제 및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전의 FTA와는 크게 다른 수준의 것이었으므로, 양국의 협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 이상의 국제경제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지는 관심 역시 높았다.

2007년 봄까지 진행되는 협상은 양국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집중되어 여러 부분에서 의견교환과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외의 여론과 관련 이익단체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2007년 3월말 협상의 만료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협상단의 마지막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결국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2003년 최초로 한-미 FTA에 관한 준비가 시작된 이후, 수년간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20~21면.
151)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9

그러나 협상의 최종타결 이후에도, 국내외의 수많은 의견들이 협상 결과나 향후 영향에 관하여 쏟아졌다. 또한 미국의 제안으로 2007년 6월에는 두 차례 추가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 미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내용이 협정문에 반영되었다.

(2) 협정의 의미

양국이 세계무역과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일본, 중국, ASEAN의 수입시장 규모를 합하는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미 FTA는 NAFTA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및 무역을 조율하는 FTA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¹⁵²⁾ 따라서 한미 FTA가 국제경제 규범으로서 다른 지역 및 FTA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제, 지적재산,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포괄하는 FTA이다. 이전까지 한국이 체결하였던 FTA와 비교하였을 때, 한-미 FTA가 포괄하는 분야가 넓은 만큼 협정문의 양도 방대하다. 이것은 그동안 쌓인 한국의 FTA 관련 정보와 기술에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NAFTA 등 미국의 기존 FTA가 준 영향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차후 진행되는 여러 FTA에서도 포괄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반위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

152) 한미 FTA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가 묶이어서 두 경제규모를 합하면, 2006년 기준 양국 GDP 규모로 14조 1,000억 달러가 되어 EU와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 4. 3].

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⁵³⁾

정부의 발표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많은 이유에서 그러한 부정론이 제시되는 것은, 한미 FTA 체결이후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이 큰 것은 그만큼 피해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¹⁵⁴⁾

한-미 FTA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이것이 제공하는 기준들이 앞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가 차지하는 규범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한-EU FTA, 한-중 FTA 등 한국과 무역규모가 큰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물론 각 관계에 따른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미 미국과 약속한 규범적 기준이 기본적인 틀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한-칠레 FTA가 국회절차를 통과하여 국내규범으로 발효되기까지 겪었던 반대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된 점을 상기해 볼 때, 한-미 FTA가 가지는 영향력에 비추어 같은 절차를 두고 정치적 논쟁도 뜨거울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정부의 대책제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153) 김도훈,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7. 5, 4면.

154) 정부도 이에 관하여 수차례의 보완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3) 협정의 구조

한-미 FTA 협정문은 각 분야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노동 및 환경분야 등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하여 매우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의 개괄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¹⁵⁵⁾

155)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mode=301&dataKey=11555

<표 16> 한-미 FTA 협정문의 구성

서 문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 3 장 농 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 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절차)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 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호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 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 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 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 외**제24장 최종 규정**

- 부속서 I (서비스/투자)
 -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 공통 주해
 - 대한민국 유보목록
 - 부록 II-가 (대한민국)
 - 미합중국 유보목록
 - 부록 II-가 (미합중국)
-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 대한민국 유보목록
 - 부록 III-가
 - 미합중국 유보목록

한-미 FTA에 따른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 양국이 FTA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로 한 점이다. 약 94%의 품목에 대해서 3년 이내에 관세가 제거되고, 나머지 품목은 5년 내지 10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¹⁵⁶⁾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또한 미국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도 사라진다. 다만, 한국의 조정관세는 유지되고 기준세율도 인정된다.

156) 명태(15년), 민어(12년)

관세제거와 함께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역구제제도이다. 한-미 FTA에서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발동을 양국이 자제하거나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상대국의 수출품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발동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 그 예이다.¹⁵⁷⁾ 반면에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여, 본 FTA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¹⁵⁸⁾ 이러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농산물 등에 대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년까지 유지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밖에, 양국은 협의를 위하여 상품위원회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FTA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농산물 분야는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한국의 중점적인 보호대상이었으며, FTA 반대론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기도 하였다. 우선, 쌀 및 쌀과 관련된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또한 기타 한국에 민감한 농산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적 취급을 도입하였다. 즉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식용과 가공품의 세번분리를 통해 별도의 취급을 하고,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장기 관세제거 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섬유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제거하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원산지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통하여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게 되었다.¹⁵⁹⁾ 또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세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57) 한-미 FTA 제10.5조.

158) 한-미 FTA 제10.1조.

159) 일부 품목에 있어서 예외가 존재한다.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였다.¹⁶⁰⁾ 이러한 조치는 FTA에 따른 국내 수입규정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섬유분야에 있어서 WTO의 기준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을 두고 있으며, 관세제거 이후 10년동안 발동이 가능하다.

한-미 FTA는 양국 사이의 모든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¹⁶¹⁾ 협정은 전문직에 관한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유보를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제의 동결, 방송서비스, 교육 및 의료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의 단계적 개방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금융서비스 분야는 그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장에서 규율한다. 금융 분야는 한국의 개방과 선진화가 불가피한 분야이므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외환위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고,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대한 교차보복을 금지하였다. 또한 농어촌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내 국책금융기관¹⁶²⁾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투자분야는 한국의 적극적인 개방을 전제로, 필요한 부분의 정부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특히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한-미 FTA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중보전,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국제중재에 피소되는 경우에 대비하였다.

한-미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및 투자 등이 아닌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 비교적 새로운 무역분야에 관해서도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이후

160) 한-미 FTA 제3.3조 및 제4.1조.

161) 항공운송, 정부조달 등은 제외된다.

162)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70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노동분야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취급 부분은, 개성공단에 관한 역외가공지역 부속서를 채택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부속서에 의하면,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의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¹⁶³⁾ 이 규정은 앞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¹⁶⁴⁾ 이밖에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협정문에 마련하였다.¹⁶⁵⁾

제 2 절 한-EU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협력협정

1. 양자간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한국과 EU 사이의 양자간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은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되었으며,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¹⁶⁶⁾ 본 협정의 본문은 총 27개조로 되어있으며,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7> 한-EU 무역협력 기본협정 본문의 구성

제 1 조 협력의 기초
제 2 조 협력의 목적
제 3 조 정치적 회담

163) 본 규정은 기존 한국의 FTA 개성공단 관련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 이외에도 심사를 통하여 다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64) http://fta.korea.kr/Inflection/sub_03.jsp

165) 한-미 FTA 부속서 22-다.

166)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korea/index_en.htm

- 제 4 조 최혜국대우
- 제 5 조 무역협력
- 제 6 조 농업 및 수산업
- 제 7 조 해상운송
- 제 8 조 조 선
- 제 9 조 지적·산업·상업적 재산권
- 제10조 기술적 규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제11조 협 의
- 제12조 경제 및 산업협력
- 제13조 마약과 자금세탁
- 제14조 과학과 기술의 협력
- 제15조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
- 제16조 에너지
- 제17조 문화·정보·통신의 협력
- 제18조 비당사국 개발에 관한 협력
- 제19조 합동위원회
- 제20조 정 의
- 제21조 발효 및 기간
- 제22조 본 협정의 불이행
- 제23조 향후 발전
- 제24조 선언서 및 부속서
- 제25조 영토적 적용
- 제26조 공식협정문

본 협정은 한국과 EU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진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경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는 과학기술, 산업, 환경, 문화, 법률 등이다.

본 협정에 부속된 정치적 선언서에서는, 양자가 정치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정은, 양측의 요청에 따라서 무역조

치에 관한 상호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의의 원칙은 WTO 협정체계에서 규율하는 범위에 합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분쟁해결을 도출한다. 본 협정은 협의를 위한 합동위원회와 정기적인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규정하였다.

2. 통관에 관한 상호 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협정

한국과 EU 사이의 통관에 관한 상호 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은 1997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전체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⁷⁾

<표 18> 한-EU 통관에 관한 상호 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협정 본문의 구성

제 1 장 일반규정

- 제 1 조 정 의
- 제 2 조 국제협약들에 따른 의무

제 2 장 통관 협력

- 제 3 조 협력의 범위

제 3 장 상호지원

- 제 4 조 지원의 범위
- 제 5 조 요청에 의한 지원
- 제 6 조 자발적 지원
- 제 7 조 통 보
- 제 8 조 지원요청의 형식과 증명
- 제 9 조 요청의 실행
- 제 10조 협의를 위한 정보형식

167)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korea/coop_maac.htm

- 제11조 지원의 예외
- 제12조 정보의 교환
- 제13조 전문가
- 제14조 비용

제 4 장 최종규정

- 제15조 합동통관협력위원회
- 제16조 실행
- 제17조 검토와 개정
- 제18조 영토적 적용
- 제19조 발효와 기간
- 제20조 공식 협정문

본 협정은 당사국들이 통관 관련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 개발,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을 상호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⁸⁾ 이에 따라서, 본 협정은 한국과 EU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관 관련 서류 및 행정절차의 협조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 3 절 한-EU FTA

1. 한-EU FTA의 추진배경

한-EU FTA는 양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EU와의 FTA에서 한국이 원하는 바는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 세계 경제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EU 시장은, 한국이 진출하기에 매우 매력적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EU의 역내수입이 시장 전체의 약 64%에 이르고 역외수출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168) 한-EU 통관에 관한 상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한 협정 제3조 1항.

상황에서, 한국이 EU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FTA가 중국, 터키,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정책은, 미국에 이어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정부는 EU와의 FTA가 심각한 미국 수출의존에 부담을 줄이고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 골고루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EU와의 FT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EU FTA 체결에 따라 선진화된 국내산업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목적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최근 EU의 아시아 경제연계강화계획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FTA 협상을 시작한 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EU의 동아시아 FTA의 첫 번째 상대가 된 것은, EU측이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한국과는 비교적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¹⁶⁹⁾ 한-EU FTA를 기반으로 EU의 대 동아시아 연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바탕에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과 EU의 경쟁도 한 몫을 하였다. EU는 한국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경쟁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고,¹⁷⁰⁾ 한-미 FTA 이전까지 경쟁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체결은 EU에게 한국시장에서의 위기감으로 다가왔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한-EU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169)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이 FTA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라고 본다.

170)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면서 해마다 4-5% 증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시장이 향후 20년간 세계 6위 수준의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김득갑,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15, 17면].

2. 협상의 준비와 경과

EU는 우리 정부가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계획할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우리의 시장개방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EU는 미국 등과 함께 FTA의 주요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04년부터 국내에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7월 한-EFTA FTA가 체결되면서 한-EU FTA의 체결가능성과 기대도 더욱 커졌다. 2006년에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6년 6월 한국과 EU의 공동위원회에서 외교부는 EU측과 FTA 협상 시작을 의무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예비협의를하기로 합의하였고, 7월과 9월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상호 관심사를 확인하였다.¹⁷¹⁾ 한편, EU 측에서도 한국과의 FTA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부진과 EU의 새로운 FTA 정책에 따라 아시아와 한국의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을 EU의 FTA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¹⁷²⁾

2007년부터 양자 사이의 FTA 협상개시는 더욱 가시화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2007년 4월 9일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EU 각료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에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을 최종적으로 부여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¹⁷³⁾

171) 또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세미나와 공청회, 민간자문회의 등이 개최되어 한-EU FTA에 관한 각계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172) 2006년 10월 4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각료이사회에 EU 신통상정책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통해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173) 김홍중, 한-EU FTA 협상 개시: 배경과 협상전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

2007년 5월 6일 한국과 EU는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EU FTA 협상을 공식선언하였다. 이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곧바로 1차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이 협상기간동안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의 4개 분야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한 본격적인 협상을 약속하였다. 2차 협상은 2007년 7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든 분야의 협정문 초안과 함께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개방안을 양측이 교환하였다.¹⁷⁴⁾ 앞으로의 협상은 이를 기초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3. 분야별 현안

현재 존재하는 한국과 EU 사이의 통상문제들을 토대로 FTA 협상에 있어서 논의될 주요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이다. 그러나 한-EU FTA에서는 그러한 마찰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EU가 지금까지 체결해온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분야 개방 수준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에 발효된 EU-칠레 제후협정에서 EU의 양허범위는 80%였고 즉시 철폐율은 43.3%였다. 2006년에 발효된 한-EFTA FTA에서 한국의 양허범위가 84.2%이고 즉시철폐가 15.8%였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없다. 다만, EU는 치즈 등 낙농 유제품, 포도주 등에 대한 까다로운 수준의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냉동 삼겹살과 냉동 닭고기, 냉동 고등어, 맥아 등에 대한 관세의 조기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계 등의 관련 산업은 한-EU FTA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2005년에 한국이 EU에 수출한 승용차는 82억 달

구소, 2007. 6, 9-10면.

174) http://www.fta.go.kr/user/fta_korea/press_view.asp

러이고 EU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8.9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의 승용차 관세율이 한국은 8%이고 EU가 10%임을 고려할 때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05년도에 99억 달러를 수출한 영상기기,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도 EU의 현재 관세율이 14%이므로 FTA 이후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반면에 고급 승용차 및 부품, 의약품, 정밀기계, 정밀화학 분야는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의 관세 철폐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화장품 분야에서, EU는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규제가 비관세장벽임을 주장하여 규제제거를 요구할 것이다.

서비스업에서는 협상에서 EU가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과 국내규제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영국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산업 강국의 주요 관심분야로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이다. 이 경우 한-미 FTA에서 체결된 내용이 협상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견이 많았던 연안 및 내륙 해운의 경우에는 한국이 EU에 대해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협상의 큰 논점이다. 한국은 게임과 인터넷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FTA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EU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의약품 정보 보호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최근 체결하는 다른 지역무역협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우 국내입법뿐만 아니라 엄격한 적용과 관리를 위한 장치를 요구할 것이며, 의약품 정보 보호 및 스카치위스키, 샴페인 등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WTO 규정 이상으로 요구할 것이다.¹⁷⁵⁾ 또한 EU의 엄격한 환경규제와 표준은 한국에게 사실상 무역장벽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175)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손경한 박진아, 한 EU 자유무역협정상 지적재산권 규정, 통상법률 76호, 법무부, 2007. 8. 10면 이하]를 참고할 것.

제 6 장 한-EU FTA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향

한-EU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관세와 서비스, 원산지, 통신,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수많은 분야에서 나타날 법적 문제들을 한-EU FTA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상에서 주장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관련 국내법의 전반적인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합치하는 대응책 마련이 수반되는 것이다.

각 분야의 법적인 대응책의 마련과는 별도로, 각 분야의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와 기술, 남북문제와 무역, 노동과 환경 등이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 역시 한-EU FTA 자체의 문제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정책과 합치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몇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다.

제 1 절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조치

1. FTA에 관련된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다자주의 국제경제규범 체계에서 여러 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 각국의 관세는 평균 약 4% 정도로 인하되었다. 또한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기본적인 역할인 관세장벽의 제거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각국은 WTO 및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였으며, 관세의

축소는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관세 수준이 낮아지면서 각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이게 되었다.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위생 검역 기준, 기술규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관세조치 등 비관세 무역장벽은 WTO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아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FTA의 체결 확대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FTA로 인하여 당사국은 역내무역에 있어서 대체로 다자주의 차원의 관세수준보다 더욱 낮은 관세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비관세 무역장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의 무역장벽의 축소에 의한 역내무역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역외무역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의 발생과 무역의 축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FTA의 확대에 의하여 더욱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미 무역구제조치는 각국이 WTO 체제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로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다. 또한 FTA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역외국의 피해, 그리고 각 FTA마다 다른 무역구제조치의 요건과 조치유형 등은 WTO 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는 FTA 체결 당사국 사이의 무역구제조치가 GATT 제24조의 내용인 ‘제한적인 무역규제를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하여 WTO와 FTA 사이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무역구제조치 중에서도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는 상대방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서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긴급한 보호 필요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반덤핑조치나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¹⁷⁶⁾

2. 한국 FTA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의 관세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관세 및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⁷⁷⁾

농산물에 대한 본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국의 농업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칠레 FTA에 명시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의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른 점은, 발동기간의 제한이 없고 대상품목이 농산물에 한정된다는 점, 120일 동안 잠정조치를 발동한다는 점이다.

176) 무역구제조치 관련 WTO 및 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분석(3) - 인도의 FTA, 37면 이하]를 참고할 것.

177) 한-칠레 FTA 제3.12조.

이밖에도 WTO 체제의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사전협의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로써 의무적인 사전협의를 필요하고 절대적 수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본 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상협의를 하고 수출국의 보복조치는 동등한 수준의 양허정지 및 관세인상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에 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본 협정 제6장에 따라서 WTO 체제의 일반적인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역시 존중된다. 즉, 관세제거에 따른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⁷⁸⁾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해서 한-칠레 FTA 협정은 제7장에서 간단한 규정을 두었다. 본 규정들은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련된 WTO 협정상 규범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는 한-칠레 FTA 제19장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¹⁷⁹⁾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 그리고 본 협정에 근거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WTO 체계에서 적용되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상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실질적인 원인이

178) 한-칠레 FTA 제6.1조.

179) 한-칠레 FTA 제7.1조.

될 경우, 수입국은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¹⁸⁰⁾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하던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둘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대 발동기간은 2년이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자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¹⁸¹⁾

양국은 WTO 협정상의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본 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¹⁸²⁾ 그러나 반덤핑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모든 개별적 마진은 양의 값이든 부의 값이든 평균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제로잉(Zeroing) 방법을 금지하여 네거티브 덤핑마진, 즉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0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덤핑마진(정상가격 수출가격)보다 낮은 관세로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낮은 관세 적용’ 원칙(lesser duty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이 WTO 협정상의 상계조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 역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¹⁸³⁾

180) 한-싱가포르 FTA 제6.4조.

181) 한-싱가포르 FTA 제6.5조.

182) 한-싱가포르 FTA 제6.2조.

183) 한-싱가포르 FTA 제6.3조.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제2.11조에서, 본 협정의 발효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될 경우에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¹⁸⁴⁾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당사국은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던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¹⁸⁵⁾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된 후 최소 3년 동안은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다시 적용할 수 없다.¹⁸⁶⁾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¹⁸⁷⁾ 다만 한-EFTA FTA는, 당사국끼리 사전 협의를 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낮은 관세 적용’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는 등, WTO 반덤핑 규정이나 한-칠레 FTA에서보다 ‘반덤핑 프렌즈 그룹’¹⁸⁸⁾의 주장을 수용하는 WTO 규범보다 더 개방적인 내용을 포함

184) 한-EFTA FTA 제2.11조 2항.

185) 한-EFTA FTA 제2.11조 4항.

186) 한-EFTA FTA 제2.11조 5항.

187) 한-EFTA FTA 제2.10조 1항.

188) 반덤핑 프렌즈그룹(Antidumping Friends Group, AFG)이란, 현행 반덤핑제도의 발동 요건이나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반덤핑조치 사용국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 등이 이에 속하며 제안서 내용은 참여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

하였다. 이밖에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격년 단위로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¹⁸⁹⁾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은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¹⁹⁰⁾ 다만 조치 개시 이전에 당사국끼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상계조치 발동을 위한 판정을 위해서, 조사 개시 이전에 조사대상이 된 상품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¹⁹¹⁾

(4) 한-ASEAN 상품무역 FTA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제9조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본 협정에서는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관세 인하 혹은 철폐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향후 7년까지로 정의하면서, 과도기간 동안에 본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²⁾

협정 당사국들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으로 인해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거나 우려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관련 상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나 발효일 직전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하지만 낮은 관세 원칙과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9) 한-EFTA FTA 제2.10조 2항.

190) 한-EFTA FTA 제2.9조 1항.

191) 한-EFTA FTA 제2.9조 2항.

192)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2항.

범위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시할 수 있다.¹⁹³⁾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부과 대상이 되는 국가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이 총수입 비율의 3% 이하일 경우 적용될 수 없고,¹⁹⁴⁾ 이러한 조치가 발동된 경우 최초 3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¹⁹⁵⁾ 그러나 만약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중에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한국과 ASEAN은 WTO 규범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인정하고 있다. 이미 WTO 체제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본 협정에 의한 긴급수입조치는 적용되지 못한다.¹⁹⁶⁾ WTO 체제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ASEAN 기본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5) 한-미 FTA

한-미 FTA의 일반적인 무역구제 관련 규정은 제10장인 무역구제 부분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10장은 제1절인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인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제3절은 무역구제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이외에 농산물 등에는 특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들이 별도로 적용된다.

한-미 FTA에서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발동을 양국이 자제하거나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상대국의 수출품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발동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⁹⁷⁾ 이러한 예는 이미 NAFTA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이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서 NAFTA

193)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3항.

194)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7항.

195)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6항.

196) 한-ASEAN 상품무역 FTA 제9조 10항.

197) 한-미 FTA 제10.5조.

회원국인 멕시코 또는 캐나다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것이 제3국이었던 한국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낳았던 경우가 있었다.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도로, 한-미 FTA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여, 본 FTA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¹⁹⁸⁾ 이러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년까지 유지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¹⁹⁹⁾ 또한 예비관정에 따른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²⁰⁰⁾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으로 되어있는 본 협정상의 과도기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한-미 FTA는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였다.²⁰¹⁾ 이러한 조치는 민감품목인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있어서 FTA에 따른 국내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섬유분야에 있어서 WTO의 기준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을 두고 있으며,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관세제거 이후 10년 동안 발동이 가능하다.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분야에 관해서, 한-미 FTA는 일반적으로 WTO 체계의 규범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²⁰²⁾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사안은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이밖에, 양국은 협의를 위하여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FTA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198) 한-미 FTA 제10.1조.

199) 한-미 FTA 제10.2조 6항.

200) 한-미 FTA 제10.3조.

201) 한-미 FTA 제3.3조 및 제4.1조.

202) 한-미 FTA 제10.7조.

3. 한-EU FTA의 무역구제조치 규정에 대한 영향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FTA 추진으로 한국은 벌써 다섯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한국산 물품에 대해 특혜적인 취급을 하는 국가도 많이 늘었다.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무역현실에서, 비관세 무역구제조치가 가지는 산업보호의 기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FTA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규범과는 다른 상대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규범이다. 이러한 이유로 FTA는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면, 보다 이로운 규범정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EU FTA가 가지는 규범적 영향, 한국과 EU의 경제구조 등이 분석되어 보다 알찬 규범정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역구제조치에 관련하여 한국의 FTA들에 나타난 특징들과 EU의 입장을 토대로 협상을 준비하면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규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칠레와의 FTA 이후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여러 협상에서 국내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과 그것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한-칠레 FTA에서 나타난 농산물 등에 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은, 국내 산업보호라는 FTA 정책의 과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WTO 체계의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FTA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몇 가지의 예외와 조건을 두었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한국의 FTA 무역구제 규정들은 공통적으로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절한 조화를 규정하였다.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율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FTA는 2년 내지 3년의 최대적용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ASEAN FTA의 7년이나

한-미 FTA의 10년과 같은 일정한 과도기간 또는 이행기간을 두어 양자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둔 것은 향후 자유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와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FTA가 비교적 WTO의 규정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같이 반덤핑에서 제로잉 등을 배제하는 식의 선진적인 방법을 찾는 규정도 있다. 또한 WTO 체계의 반덤핑과 상계조치 규정을 수용하면서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규정도 있다.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덤핑조치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무역구제조치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둔 규정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 관련 규정들의 특징들은 한-EU FTA에서도 상당부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U가 WTO 체계에서도 비교적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이용해왔다는 점, 농산물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취약한 경우가 있다는 점, EU 내부 국가별로도 산업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 측에서도 개성공단에 관련된 원산지 특혜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한-EU FTA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한-EU FTA 추진과 이후의 FTA 정책을 위해서도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내 법규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4.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 관련 국내규범

국내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들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 등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WTO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WTO 협정들의 내

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FTA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위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특별조항 또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표 19> FTA 관련 국내 무역구제법규

<p>- 대외무역법 제28조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제한조치의 시행 등 (수입수량규제)</p> <p>- 관세법 제67조의 2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 (수입가격규제)</p> <p>-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제 5 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p> <p>-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 긴급관세조치 제 7 조 잠정긴급관세조치</p> <p>-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p> <p>-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4조의 2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p>
--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²⁰³⁾은 외국과의 FTA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규정이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고 하여, 무역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203) 본조 신설 2004. 1. 20.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에서 규율한다.²⁰⁴⁾

이밖에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특정국 물품에 대하여 ‘특별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FTA 체결에 따른 특정국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규제와 수입가격규제를 실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근거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칠레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특별조항을 둔 것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국내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긴급관세조치를, 제5조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조치의 법적근거와 규제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된 이후에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관세특별법)’의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긴급관세조치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FTA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또는 규제 장치이다.²⁰⁵⁾

5. 한-EU FTA 등 FTA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규범의 개편방안

FTA와 관련하여 무역구제법규의 가장 큰 법적문제는, FTA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204)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제 6 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2.

205)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분석(3) - 인도의 FTA, 149~151면.

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와 제 7 조,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모두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일 뿐이다.²⁰⁶⁾ 많은 FTA에서 양자간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제거하거나 WTO 협정의 내용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일부의 FTA에서는 WTO 협정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²⁰⁷⁾ 따라서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규정처럼, 규정을 통해서 FTA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체결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하나의 법규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통일된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조치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와는 다른 점이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이다. 따라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분쟁을 야기하거나 국내의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산업피해구제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206) 심지어 한-칠레 FTA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역시 그러하다.

207)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p. 160.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²⁰⁸⁾

산업피해구제법에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대로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FTA 상대국마다 무역구제체도의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달라져 무역구제기관의 업무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²⁰⁹⁾ 즉, 장기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 무역구제법규가 복잡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 사이에도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는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연구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원활한 무역구제법규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산업피해구제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무역구제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²¹⁰⁾

208) 이에 관하여 최소한 통상교섭본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같이 관련부처의 협의 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9)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가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2006년 한해에 발효되었다. 게다가 EFTA와의 FTA는 구성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협정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업무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10) 김봉철, 앞의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92-96면.

제 2 절 금융과 투자 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1. 금융 및 투자 분야의 법적문제 발생의 가능성

금융 및 투자분야는 한-EU FTA 체결로 국내 규범의 새로운 보완이 다양하게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물론 FTA 규정에 나타나는 내용에도 법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그보다는 실제로 협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금융 및 투자 관련 국내 규범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투자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지나친 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고, 기존의 근거법규들이 FTA에서 추구하는 투자자유화에 직접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제시되어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규범들이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막는 계기가 되어, 외국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이나 근거규범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²¹¹⁾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낳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분쟁의 주체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규정의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FTA에 존재하면서도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금융 및 투자분야의 대책을 논의한다.

21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등,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 제 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검토보고서, 2007. 2. 1.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어온 약 2500개의 투자협정들은 대부분 이러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많지 않았던 투자협정이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만큼 국제투자분쟁도 증가하였다.²¹²⁾ 그러나 투자분야를 포함한 FTA에서 직접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가 처음이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법적 측면에서 분쟁해결의 당사자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국가사이에 체결된 FTA와 같은 협정은,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정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고,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도 충실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이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또는 국내법원이 아닌 중재판정이라는 제3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즉, 본 제도는 협정에서 미리 약속한 국제중재심판의 결과를 투자자와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중재제도는 투자자와 상대방 국가가 각 대표와 중재자를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중재심판소(arbitration tribunal)가 미리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²¹³⁾

212) 1965년부터 1994년 사이에 ICSID의 중재심판이 32건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무려 140건이나 되었다.

213) 따라서 국제중재심판은 법규로 정해진 절차와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

본 제도의 절차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내절차 또는 국제분쟁심판을 선택한다. 만일 투자자가 국제중재심판을 따르는 경우, 중재신청서 제출 90일 이전까지는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한다. 신청서제출에 따라서 국제중재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을 이른바 ‘냉각기간’이라고 한다. 중재판정은 확정력, 기속력을 가지며, 판정에 따른 결과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집행된다.²¹⁴⁾

3.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및 투자규정의 구성

국가간 별도로 체결되어오던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NAFTA 이후 FTA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역시 FTA에서 다른 투자관련 규정과 함께 명시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NAFTA의 분쟁은, 1994년 이후 2007년 4월까지 총 47건이 발생하였다. 이중 미국이 17건, 멕시코가 15건, 캐나다가 15건의 분쟁에 제소되었으며, 확정된 20건 중에서 국가가 투자자에 패한 경우는 총 5건²¹⁵⁾에 약 3천 5백만 달러의 배상금이 결정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FTA에 규정되는 투자관련 규범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투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원의 재판과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다. 국제중재심판은 1923년 제네바 의정서(Geneva Protocol 1923)에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1958년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현재 이러한 국제중재심판에 참여하는 국가는 140개국을 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 ICSID)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의한 중재판정부 등이 있다.

214) http://www.fta.go.kr/user/fta_korea/Data_view.asp

215) 캐나다가 3건, 멕시코가 2건이며,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없다.

명시한 규정이다. FTA의 원칙과 일반 국제경제법의 원칙에 합치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재산권 수용시 보상의 원칙, 최저대우 기준,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의 규정들이 그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에 당사국이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규정을 둔다.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중재절차를 따를 것인가를 명시하기도 하고,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당사국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셋째, 투자와 관련된 규정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정의규정을 두거나, 중재심판을 위한 용어 등을 풀이하는 것이다. 넷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들을 설정하거나 특별한 요건을 명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사국 정부의 특정규제 또는 조치에 대해서 투자자가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나 조치의 침해정도, 조세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은 부속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4. 한국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규정

(1) 한-미 FTA 이전의 규정내용

한국 역시 일본 및 유럽국가들과 80여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대부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에 이어 한-미 FTA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한-싱가포르 FTA에 나타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²¹⁶⁾

216) http://www.fta.go.kr/pds/fta_korea/singapore/kor/CHAPTER10.pdf

<표 20> 한-싱가포르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규정

제3절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제 10.19 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조는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이 장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에 적용되며,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동등한 대우와 공정한 법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모두 보장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수립한다.

2. 분쟁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

3. 분쟁이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월 내에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해결될 수 없고, 당해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제5항에 규정된 잠정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는 제외)에, 또는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의 해결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투자자는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다. 그 밖의 중재기구,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름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분쟁투자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나. 제3항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제기할 때까지 분쟁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기업이 아닐 것. 그리고

다.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3항가호·나호 또는 다호의 장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장으로 지명. 그리고

(2) 이 장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을 포함)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5. 어떠한 당사국도 분쟁 투자자가 권리 및 이익 보전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장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의 손해배상과 분쟁 사안의 실질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보호 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6. 만일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여 따르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를 제외한 이전의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유사하게 명시되었고, 이것은 FTA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투자협정들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까지 한국은 본 규정을 근거로 외국투자자의 직접중재심판 요청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2)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규정

한국의 기존 FTA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련하여 외국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FTA와 한-미 FTA 사이에는 경제교류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미국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분쟁가능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²¹⁷⁾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²¹⁸⁾ 다만 투자자의 중재요청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의 예외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미 FTA에서 나타난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주로 ‘수용’의 범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용부속서’의 내용에서 나타난다. 즉, 수용에

217) 특히 미국과 호주 사이의 FTA 협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호주 측이 본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규정이 없는 FTA가 체결된 예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218) 정부가 밝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 본 제도가 투자자 모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한 중립적 법정에서 투자분쟁을 법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따라 고안된 합리적인 것이며, 둘째 한국의 기존 FTA 및 8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이 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미국 투자자의 불필요한 불신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셋째 본 제도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향후 중국 또는 ASEAN과의 FTA 체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에 근거한다.

따른 국가조치는 투자자의 중대판정 요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간접수용’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부속서를 포함한 것이다.²¹⁹⁾ 수용부속서에 따르면, 간접수용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의 침해정도, 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본 부속서는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를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rare circumstances) 수용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제한하여 간접수용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여러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부속서를 두었다.

5. 문제발생의 위험성과 한-EU FTA에 대한 영향

지금까지 한국이 한 차례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따라 제소된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하는 관련 중재심판건수와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발생가능성과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수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미국계 다국적기업 또는 투자전문회사인 것을 감안하면, 한-미 FTA 이후 본 제도에 따른 국제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219) 수용은 원래 특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개인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부른다. 간접수용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수용은 아니지만 정부의 행위로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편의상 간접 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간접수용은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와 보상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민이 아니므로 희생은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를 꺼릴 것이므로 각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간접수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은 ‘외국투자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및 중재심판의 요청은 국가가 아닌 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에 있어서 국가는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이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낳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막강한 자본과 정보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중재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²⁰⁾

EU 역시 미국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와 투자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에서,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EU 국가의 투자자 국내로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한-EU FTA는 이를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문제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에서 유입된 자금과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FTA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규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²²¹⁾ 한-미 FTA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대응책

한-미 FTA에 나타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면, 본 제도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대응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재절차 자체를 조금이나마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도 분쟁절차의 공식 언어로 하거나, 의장중재인을 제3국인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중재 자료와 심리절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²²²⁾ 둘째,

220)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몇 건의 사례들은 체코,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가주도의 정책을 취하는 이들 국가에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221) FTA에서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등에서 마련되어 있다.

22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 4. 18.

중재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수용’의 개념을 최대한 한정하여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협정 외부적인 국내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중재제소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사전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주요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법률자문 및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정부법무공단’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실제 중재요청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방법도 준비하였다.²²³⁾

그러나 이러한 대응조치만으로는 분쟁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규범 및 정책의 ‘국제규격화’와 개선이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경제규제가 꽤 많은 편이고, 때로는 규제가 협정의 의무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정책운영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제 3 절 한반도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파생되는 법적 문제점

1. 문제점의 인식

FTA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경제와 무역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은 한국의 FTA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비추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및 무역의 문제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223) 이밖에 정부는 보완대책 등 상세논의를 위해 ‘투자분쟁 대응 민관 테스트포스’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법무부 보도자료, 2007. 4. 2].

취급하는 중심문제이고, 그것이 정치 및 외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얽혀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정부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TA 정책이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FTA 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바로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련된 사안들이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개성시 봉동리 일대의 2천만 평을 남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분단 후 최대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다.²²⁴⁾ 개성공단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제사업으로서 의미이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은 민족공영과 동포애에 기반을 두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발전을 제공하는 윈-윈(Win-Win)의 경제사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같은 다양한 남북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위상 제고와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 등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평화사업으로서 의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첨예한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착시키는 평화사업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²⁵⁾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법적성격은, 순수한 내국간 거래와는 당연히 다르다. 즉, 내국간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224)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사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25) 조명철 정승호 윤정혁 이상민,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 정책연구 05-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6~27면.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4 항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²²⁶⁾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최근에 한국이 체결하는 FTA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들에 대해서 남한의 생산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FTA에 따라 관세 및 기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EU FTA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관세 혜택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EU측이 인정하는 동시에 남한의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북한의 경제난을 개선할 수 있는 등,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만 특별규정이 한-EU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에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의 과정에서 EU측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의 생산품에 대한 혜택을 약속받고 차후에 이를 부담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남북한 인적교류에 관련된 국제사법적 문제, 북한 관련 남한 국내법의 충돌가능성,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련된 남북한 국내법규들의 비교,²²⁷⁾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남한과 북한의 교류에 특혜를 부여할 법논리의 제시²²⁸⁾ 등 매우 다양

226)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76면.

227)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5, 78면.

228)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교류를 민족내부의 특수거래로 간주하여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GATT 제 1 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

하고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력에 대한 보호 및 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논의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체결된 한국의 FTA들에 나타난 개성공업지구 생산품 혜택규정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뒤 FTA와 관련한 규범적 개선부분을 도출한다.

2. 한국의 FTA에 나타난 개성공업지구 관세혜택 규정의 내용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해온 FTA 중에서, 한-칠레 FTA를 제외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상품무역분야 FTA 그리고 한-미 FTA까지 대부분의 FTA에서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혜택규정을 처음 도입한 것은 한-싱가포르 FTA이다. 즉 개성공업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에,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의 특혜관세를 처음 누리게 되었다.²²⁹⁾ 이는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해서는, WTO 회원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 의무면제를 받거나(WTO 설립협정 제 9 조 제 3 항), 남북한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사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WTO의 규범 내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WTO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18 20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남한이 체결한 제3국과 FTA와 남북한 지역무역협정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29) 한-싱가포르 FTA 제4장 원산지 규칙에 대한 부속서 제4.3조.

된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WTO 이행법'(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²³⁰⁾ 이 조항이 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쌀과 시멘트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미국이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국제거래라고 하여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²³¹⁾

한-EFTA FTA에서도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이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앞의 두 FTA에 이어 한-ASEAN FTA 상품협정에서도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았다. 이전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가 인정되고 있으나, 본 협정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과 경쟁관계를 가지고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칠레 FTA를 제외한 이후의 모든 FTA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²³²⁾ 따라서 향후 FTA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개성공업지구 특별조항이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체결된 한-미 FTA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취급 부분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역외가공지역 부속서를 채택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부속서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역

230) 본법 제5조는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국가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31) 서헌재, 앞의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30면 참조.

232) 개성공업지구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의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이것은 미-이스라엘 FTA가 요르단의 특정지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해서 이스라엘제품으로 인정한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²³³⁾

본 규정은 기존 한국의 FTA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성공업지구 이외에도 심사를 통하여 다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은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²³⁴⁾ 이밖에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한-미 FTA 협정문에 마련하였다.²³⁵⁾

3. 개성공업지구의 노동 관련 규정

(1)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고, 2003년 4월 14일에 1차 개정되었다. 공업지구법은 총 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지금까지의 단순 위탁가공형식이 아닌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특구로서 공업지구법이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2005년 6월 28일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공업지구법 외에 13개의 하위규정을 합의하였다. 그 13개의 하위규정 중에는 노동을 규율하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규정에 대하여는 따로 장을 마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공업지구법에서의 노동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33)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법률 73호, 법무부, 2007. 2, 15면 참조.

234) http://fta.korea.kr/Inflection/sub_03.jsp

235) 한-미 FTA 부속서 22-다.

공업지구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으로서 노동관련 조항들은 공업지구 노동관련 규정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지구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의 관리에 있어서 노동과 관련하여 기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장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 규정은 제37조로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제37조의 내용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북한의 인력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의 경우에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도기관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²³⁶⁾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북한의 현지 인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제3조)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외국인 및 남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북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현지인 이외의 외국인을 관리인이나 특수직종의 기술자 내지 기능공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중앙무역기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노동규정 제3조)²³⁷⁾

노동행정기관의 인력배치 작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북한 본래의 기업소에서는 개별근로자와 북한기업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직업동맹과 외국투자기업간의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기업이 개별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

236) 개정 전 제37조의 내용은 남측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지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통제적인 의미가 있었으나 협의를 삭제하고 남측 근로자 채용 후 지도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출기업의 남측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관리인원, 특수직종 근로자) 선발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37) ‘중앙무역기관과의 합의’라고 하는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일반기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받게 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직업동맹과의 단체계약 체결을 통해 노동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단체계약은 일종의 ‘단체협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보수와 보험후생, 노동보호와 근로조건 및 노동규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규정과 비교하여 보아도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 에 외국인 및 남한측 근로자의 채용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개성공단에 가지고 있는 기대 및 향후 북한의 개방태도를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합영법이나 외국인투자법, 여타의 특구개발규정과 다르게 개성공업지구법은 남한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통제적 성격보다는 협력적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003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총 7장 49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이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과는 달리 ‘근로자와 기업간의 직접적 관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규정의 제10조인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지불에 있어서 노동규정은 근로자와 직접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공급은 인력알선기업²³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채용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이나 특구의 노동규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노동규정 가운데 총칙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1장은 노동규정의 목적, 적용대상 및 근로자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238) ‘인력알선기업’은 규정상 ‘노력알선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르면 노동규정은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 측면에서 질서를 보장하여 각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노동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²³⁹⁾ 이러한 목적하에 제정된 노동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모든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과 그 종업원에게 적용된다.²⁴⁰⁾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채용은 이미 개성공업지구법 제37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현지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국인 및 남한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¹⁾

이밖에 제1장은 근로조건 및 생명 건강에 대한 보장(제4조),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책정(제5조), 기업활동과 무관한 노력동원의 금지(제6조) 및 감독통제기관(공업지구관리기관)의 지정(제7조) 등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는 노력알선기업이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제공하고, 기업은 필요한 근로자를 인력알선기업에 신청한다. 기업은 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한 직접채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규정 제10조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체는 선발된 ‘근로자와 기업’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이 월임금, 채용기간, 근로시간 등을 확정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근로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²⁾

노동규정 제2장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근로자 채용의 구조를 밝히고 있으며, 근로자의 해고와 사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이나 제1장에서 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2장에서는 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 기업의 노동규칙(취업규칙), 해고, 해고요건, 해고를

239)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1조.

240)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조.

241)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3조.

242) 한편 노동규정 제13조는 종업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보호 기준, 노동생활 질서 및 상벌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할 수 없는 조건, 근로자에 의한 사직까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 48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근로시간은 근로자 채용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48시간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휴게 및 휴식, 휴일,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휴가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전 및 산후휴가인데 60일간의 산전, 90일 산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남한의 산전 및 산후휴가 90일보다 일수가 많다.

이밖에 노동규정에는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및 보건과 산재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채광, 조명, 통풍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무환경 조정(제33조) 및 산재예방 시설의 완비(제38조 제2문), 근로자 보호물자의 적절한 공급(제37조), 산업안전기술교육의 실시(제36조), 산재발생시 조업중지 및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제38조 제1문),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 및 심의(제39조) 등이 그것이다.²⁴³⁾

4. 개성공업지구 노동력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동력 관리상의 문제점

전반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노무관리는 법과 상당히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 법규정의 실제적 또는 구체적인 부분이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 기업활동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243) 노동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조의 설립에 대한 강제나 제한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종업원대표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어 기업 내에 종업원대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근로자 채용은 북한당국을 통한 간접고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규정은 인력알선 기업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문기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지도총국을 통해 인력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공급에 있어서 전문성을 결여한 지도총국을 통한 인력알선은 공급된 인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²⁴⁴⁾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인력알선 계약을 하는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알선계약 당사자 사이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 요청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에 생길 문제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²⁴⁵⁾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언론의 민감한 반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에 맞지 않는 근로자의 공급에 따른 채용거부를 정리해 고라는 등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내 입지를 좁게 만들 수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성공업지구가 어디까지나 시범적 사업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한 다소간의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다 유연한 끈기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신중함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법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북측과의 정치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

244) 또한 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력알선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기구의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적 인력공급업체로서의 지위를 독점함으로써 진출기업과 힘의 대등성의 균형을 잃을 수 있고, 나중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편파적인 인력공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45) 또한 법에 규정된 임금의 직접지급 문제 역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노사간의 신뢰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의 KEDO의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개성공단단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운영사업의 성공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남한기업과 북한 노동력간의 신뢰, 더 나아가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지 못한다면, 노동력 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수월한 문제해결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2) 제도적 개선점

우선 FTA의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²⁴⁶⁾

1) 인력알선과 관련하여 인력알선 종료시간에 대한 규율, 인력교체에 대한 규정, 거절된 근로자에 대한 제재 등의 보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의 마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²⁴⁷⁾

2) 인력에 대한 기업의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발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인력알선기업(현재는 지도총국)이 밝히는 것, 기업의 근로자 신상명세 제공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금의 직불문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물자를 배분하

246) 문무기 윤문희, 개성공단의 인력관리 실태와 노동법제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6. 5, 58~61면.

247) 이를 위해서 인력의 공급과정에서부터 남북한이 인력관리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지도총국이나 관리위원회의 협의 속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노동규정상 나타나는 노동보수 등²⁴⁸⁾에 관한 용어는 사용에 있어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각각의 임금산정(예를 들면 최저임금 등)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하위규정의 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5) 채용, 해고, 작업지시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권한을 우리 기업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최근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의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규정에 의한 해고는 기타 외국인투자규정에 비하여 해고의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지 않아 훨씬 더 완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채용이나 해고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구제가 필요할 것이다.²⁴⁹⁾

6)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언어의 동일성, 훌륭한 재원의 제공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력에 대하여 이직이 잦지 않도록 하는 점, 그리고 개별성과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북한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기업복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기업간 경쟁으로 복지의 요구에 끌려가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현재의 출퇴근 시간 및 방법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도 고려할 만하다.

248) 월노임, 노임 등 여러 가지 노동보수와 관련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249) 또한 최근에는 많은 개선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기업의 업무지시보다는 복측이 사전에 내정한 종업원대표의 지시에 보다 복종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지휘 및 명령권을 기업의 고유권한으로 시급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작업시간을 현장실정에 맞게 운용하여 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8) 개인별 포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 우수자, 성실하게 근로한 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임금의 직불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 개성공업지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 관련 당국자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들의 북한인력 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즉, 표준화된 인사노무관리 지침의 마련은 물론 노사 및 남북간 법제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상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또는 실무적인 준칙의 마련이 시급하다.

10) 사업의 확대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시범단지로서 그 규모가 작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의 제2단계, 제3단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갈등 및 입주기업간의 갈등, 근로자간의 갈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고, 근로자 보호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듯하다. 이러한 갈등해소의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개별적 분쟁뿐만 아니라 집단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노동규정 및 공업지구법이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가장 우선될 것이지만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노사의 구제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비록 개성공업지구가 저렴하고 질 높은 노동력의 활용에 기반하여 전략적으로 조성된 생산기지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권 내지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대한 바탕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근로자를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대우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제정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 내용들은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인력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ILO 등의 국제 노동기준에 따를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여, FTA의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EU등 상대방과 FTA를 통해 약속한 노동기준이 이러한 개선점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한-EU FTA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FTA에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제 4 절 국내외 규범체계의 정립에 따른 FTA 추진

1. FTA 정책의 추진과 법률의 제정 필요성

한-칠레 FTA 이후 한-미 FTA 체결까지 그동안 정부가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 국내외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FTA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방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과도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FTA가 대부분 ‘정부주도 후 국회 및 사회적 논의’라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FTA 정책이 이미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국내 상황과 여론이 FTA에 관해 호의적일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논의한 모습이 뚜렷하다.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러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 한-EU FTA와 현재 진행중인 다른 FTA 협상들은 미리 계획되어 있던 로드맵을 따라 움직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논의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촉구해야 할 필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FTA를 진행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일관성 있게 FTA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FTA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는 숙제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FTA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와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 등을 명확하게 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FTA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FTA 정책의 지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협정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 추진 이행법은 FTA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만을 추구하거나 효과적 인 ‘이행’만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추진’과 ‘이행’을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미 체결된 특정한 FTA의 이행만을 위한 특별법 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⁵⁰⁾

250) 미국의 NAFTA 이행법이나 우리나라의 WTO 이행법은 향후 FTA의 확대 또는 국

2. ‘통상절차법안’의 마련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WTO 협정의 체결, 그리고 수차례의 FTA 체결로 이어지는 무역 및 통상조약은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큰 중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조약들이 정부의 외교 및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민경제에도 큰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통상조약체결 과정에서 국회 및 일반 사회에도 일정한 관여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공청회의 무산, 부실한 경제영향분석,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 통합협정문 공개논란, 영문협정문안 국문번역본 제공 문제, 국회 FTA특위 과정에서의 공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법안들의 제출까지 이어졌다.

2006년 국회에 제출된 이와 같은 법안은 총 세 가지였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 제정안’(권영길 법안)²⁵¹⁾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경 법안)²⁵²⁾ 그리고 ‘통상 협상 절차법 제정안’(송영길 법안)²⁵³⁾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온 통상조약 체결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는 것이다.²⁵⁴⁾

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특정한 협정을 이행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FTA 정책을 위한 추진 이행법의 성격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FTA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분석(3) - 중국의 FTA, 125면].

251) 권영길 의원 및 4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함.

252) 이상경 의원 및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함.

253) 송영길 의원 및 3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함.

254) 최원목, 한국 통상절차법안의 문제점과 법 제정 방향, 통상법률 72호, 법무부, 2006. 12. 11면.

권영길 법안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통상조약에 대해 협상추진 전, 가서명과 정식서명 사이에 국회로부터 총 2회의 사전동의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경 법안은 국회의 사전동의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조약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변경요청권, 협상개시, 진행과 관련한 대국회 보고의무 등의 내용에서 권영길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²⁵⁵⁾ 이에 반해서 송영길 법안은 위 2개 법안과 비교할 때 국회의 권한을 최소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²⁵⁶⁾ 이밖에도 위 세 법안들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조약에 따른 영향평가, 민간위원회,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다.²⁵⁷⁾

지금까지 비준된 한국의 대외통상 조약과 관련하여 그 체결 과정과 국회의 비준 동의, 그리고 비준에 이르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시각은 적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의 비준 동의는 사실상 정부의 협상 결과를 추인한다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었고, 정부의 협상과 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한-미 FTA의 진행과 체결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한-칠레 FTA 이후 한-미 FTA까지 체결되는 동안, FTA 체결에 관한 국내 절차규범들²⁵⁸⁾이 모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이

255) 권영길 법안이 이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반하는 위헌성 비판이 있다. 또한 이상경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협상 추진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6)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은 적지만, 다른 법안들에 비해 통상절차법에서 담고자 하는 의미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257) 각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왕상한, ‘통상절차법안’의 비판적 검토, 통상법률 72호, 법무부, 2006. 12, 76면] 이하를 참고할 것.

258) 이러한 FTA 정책추진에 관련된 절차적 규범들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규

FTA의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법적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다.²⁵⁹⁾ 2006년 국회에 제출된 3개의 통상절차법안은 모두 정부의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국회의 조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통상협정에 대한 사전대책과 협상전략 수립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와 체제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 법안들의 위헌성 논란이나 실제 내용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통상절차법안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²⁶⁰⁾

3. 피해최소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규범

(1)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

FTA는 국내 일부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인력의 재분배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미 FTA가 여러 차례 추진되면서, FTA와 관련된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실체규범들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특별법으로는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이 있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라서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²⁶¹⁾

정’(대통령령)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이 있다.

259)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분석(1) - 브라질의 FTA, 134면.

260) 다만, 구체적으로 법안들에 대한 더욱 깊은 논의와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261) 본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었고, 본문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은 2007년 8월 3일까지 세 차례 개정된 바 있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⁶²⁾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였다.²⁶³⁾ 또한 FTA의 이행으로 큰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수매 비축 및 가공과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는 별도로, WTO 출범에 따른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부 개정을 통하여 FTA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부채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본법 제4조의 2는 한-칠레 FTA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농어업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었다.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²⁶⁴⁾ 이 법의 취지는 FTA로 인한 농어업 이외의 산업분야에서 충격을 줄이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²⁶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262)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 제4조.

263)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264) 본법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발효된 2006년에 제정되었다.

265)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 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 재취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특별법의 문제점과 한-EU FTA 이후의 방향

취약산업 또는 그러한 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 법률들은 한-EU FTA 및 앞으로 체결될 FT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무역조정지원법은 본법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의 증명 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이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 중 6개월 이상 매출액이나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혹은 감소할 것이 확실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해당 기업의 상품과 같은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경기변동이나 이전의 산업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FTA에 의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

둘째, 지원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크게 구별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것은 중복지원의 가능성이나 본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른 규범과 구별될 수 있는, 즉 ‘FTA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기금운용에 관한 투명성 또는 합리성이 요구된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분이 누수되거나 잘못 투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금이 경직되게 활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 규범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서는 ‘FTA이행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물론 본법이 제정될 당시 한-칠레 FTA의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농어업’일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EU FTA에 따른 피해는 다른 FTA들에 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업에만 임무가 국한된 ‘FTA이행 지원위원회’는, 명칭 또는 그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²⁶⁶⁾

4. 주변국들과 무역 관련 규범들의 조화 필요성

FTA의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개선작업은 국제적 표준을 찾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에 이어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FTA의 추진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중 일 3국의 국내법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동북아시아 법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법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본적인 사법체계는 소수의 규정이나 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최근에 와서 양국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를 같이하므로 양국 법제의 동질성과 상호접근은 불가피한 것이다.²⁶⁷⁾ 중국의 법체제는 개방경제와 WTO 가입으로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국 법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함을 비교하여 그 통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본다. 특히 동북아 3

266) 최근 개정된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무장관을 농림부장관만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포함하고 있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267) 이균성, 『기업의 구조조정과 주식회사법제의 개혁』,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현안과 과제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7면.

국이 사용하는 법률용어도 한자어가 많아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이나 영미법계 법체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동북아시아 법체계의 정립은 가능성이 충분하다.²⁶⁸⁾

FTA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역규범들의 조화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관세법과 원산지규정의 조화는 자유무역이 전제 되면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반덤핑규범도 원칙적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과도기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보다 개선하여 조사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같은 WTO 다자간 협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규범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쟁력과 국내정서를 고려하면, 농업보조금의 허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WTO 규범의 수준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하여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법에 의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FTA의 실제규정보다는 당사국의 국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적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역외적용의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의, 정보교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국의 경쟁법상 보호수준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⁹⁾

268) 이영준 김동훈 박영복 양창수 이상욱, 『‘동북아시아 매매법의 통일’ 좌담회』,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8, 8면.

269) 강문성 박순찬 송유철 윤미경 이근, □□한 중 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

제 7 장 결론 및 요약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다. 한-EU FTA는 단순히 한국과 EU 사이의 양자간 FTA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국내의 전반적인 FTA 정책과 동북아시아 경제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운 FTA 현상에 따라서, 한-EU FTA는 단순한 양자간 무역장벽의 제거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정이 될 것이다. 또한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협력체이므로,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과 EU의 각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변수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여러 가지 영향과 과제가 혼재되어 있다.

EU는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왔다. 각 협정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양하여 그 법적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EU의 확대와 연관이 있으며, WTO 체제의 등장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때로는 EU의 지역무역협정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변국들과의 협정체결에서 벗어나 남미국가 및 아시아 등과 협력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EU는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을 지닌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경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이 체결한 FTA들은 한-EU FT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기존의 FTA 상대방과 EU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

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참고.

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협상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한-EU FTA가 진행되면서, 분야별 현안이 협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FTA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한국의 FTA에 일관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였던 무역구제조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개성공업지구 관련 노동기준, 협정 추진 국내절차법안 및 규범체계정립 등의 내용들은, 한-EU FTA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들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FTA 체결과 이행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많은 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해결책의 제시를 기다릴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문성 박순찬 송유철 윤미경 이근, 『한 중 일 무역규범의 비교 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강문성 권경덕 김양희 김홍중 이종화 정인교,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정책연구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1) - 브라질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2) - 러시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_____,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4) - 중국의 FTA』, 현안분석 2007-03,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 에듀케이션, 2004

김홍중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문무기 윤문희, 『개성공단의 인력관리 실태와 노동법제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6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박변순 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_____,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_____,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조명철 정승호 윤정혁 이상민,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 정책연구 05-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5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_____,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_____, 『한-ASEANEFTA FTA 주요 내용-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김도훈, 『한 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7. 1

_____,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

-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7. 5
-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15
-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한미FTA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2006. 12
- _____,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 김홍중, 『한-EU FTA 협상 개시: 배경과 협상전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7. 6
- 노현수, 『WTO 체제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확산의 효과』, 『국제상학』 12권 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0. 5
- 손경한 박진아, 『한 EU 자유무역협정상 지적재산권 규정』, 『통상법률』 76호, 법무부, 2007. 8
- 송유철,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의 개정논의 현황과 대응과제』, 『통상법률』 42호, 법무부, 2001. 12
- 신정섭, 『EU와 ASEM에 대한 우리의 자세』, 『외교』 63호, 한국외교협회, 2002. 10
- 왕상한, 『‘통상절차법안’의 비판적 검토』, 『통상법률』 72호, 법무부, 2006. 12
- 원용걸,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체제』, 『통상법률』 13호, 법무부, 1997. 2

- _____,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10년의 평가』, 『통상법률』 70호, 법무부, 2006. 8
- 이균성, 『기업의 구조조정과 주식회사법제의 개혁』,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현안과 과제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이영준 김동훈 박영복 양창수 이상욱, 『‘동북아시아 매매법의 통일’ 좌담회』,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8
-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법률』 73호, 법무부, 2007. 2
- 최원목, 『한국 통상절차법안의 문제점과 법 제정 방향』, 『통상법률』 72호, 법무부, 2006. 12
- 법무부 보도자료, 2007. 4. 2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 2003. 5. 22
- _____,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 _____,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 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0. 23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 4. 3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 4. 18.
- 한미FTA저지법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등, 『한미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검토보고서, 2007. 2. 1
- 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외국문헌]

- Amaryllis Verhoeven, *The European Union in Search of a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Theory*, Kluwer Law International, Hague, 2002
- Asif H. Qureshi,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trade norm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Catherine Barnard,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 The Four Freedom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4
- Damian Chalmers, *European Union Law (Volume I) - Law and EU Governmen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Aldershot, 1998
-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rgration* (Jaime de Melo & Arvind Panagariy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IT Press, 2000
- Josephine Steiner Lorna Woods Christian Twigg-Flesner, *EU Law* (9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 Francis Snyder, *Regional and Glob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Hart Publishing, Oxford, 2001
- Mitsuo Matsushita Thomas J. Schoenbaum Petros C. Mavroidis, *The*

- World Trade Organization - 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6
- Nicholas Moussis, *Guide to European Policies* (10th revised edition), European Study Service, Rixensart(Belgium), 2004
- Ralph H. Folsom, *European Community Law*, West Publishing Company, St. Paul, 1992
- Walter Cairns, *Introduction to European Union Law*,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London, 1997
-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 Chung Rok Pang, "Policy Networks and Multiple Lobbying Strategies in EU Trade Policy-Making", *Asia-Europe Journal*, vol. 2, no. 3, 2004
- Copenhagen Economics & Prof. J. F. Francois,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Copenhagen Economics*, 2007. 3
- 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 Kim, Dong-Hoon and 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 Pascal Lamy,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U'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in Trade

- Policy”, World Economy, vol. 25, 2002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 http://secretariat.efta.int/Web/InfoKit/Info_Kit/WhatistheEEA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switzerland/index_en.htm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regions/euromed/index_en.htm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turkey/index_en.htm
- http://ec.europa.eu/development/Geographical/CotonouIntro_en.cfm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regions/acp/plcg_en.htm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southafrica/index_en.htm
-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korea/index_en.htm
-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7/march/tradoc_134017.pdf
- http://www.fta.go.kr/pds/fta_korea/singapore/kor/CHAPTER10.pdf
- http://www.fta.go.kr/user/fta_korea/Data_view.asp
- http://www.fta.go.kr/user/fta_korea/press_view.asp
-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
-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9

-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mode=301&dataKey=11555
- http://fta.korea.kr/Inflection/sub_03.jsp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EU의 지역무역협정 본문의 구성

- EU-남아프리카공화국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 EU-칠레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 EU-멕시코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 EU-이스라엘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 코토누 협정 본문의 구성

관련 국내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부 록

EU-남아프리카공화국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EU의 지역무역협정 본문의 구성

TITLE	
GENERAL OBJECTIVES, PRINCIPLES AND POLITICAL DIALOGUE	
<i>Article 1</i>	I
Objectives	
<i>Article 2</i>	
Essential element	
<i>Article 3</i>	
Non-execution	
<i>Article 4</i>	
Political dialogue	
TITLE	
TRADE	
SECTION A	
GENERAL	
<i>Article 5</i>	II
Free trade area	
<i>Article 6</i>	
Classification of goods	
<i>Article 7</i>	
Basic duty	
<i>Article 8</i>	
Customs duties of a fiscal nature	

Article 9

Charges having an equivalent effect to customs duties

SECTION B
INDUSTRIAL PRODUCTS

Article 10

Definition

Article 11

Tariff elimination by the Community

Article 12

Tariff elimination by South Africa

SECTION C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3

Definition

Article 14

Tariff elimination by the Community

Article 15

Tariff elimination by South Africa

Article 16

Agricultural safeguard

Article 17

Accelerated tariff elimination by South Africa

Article 18

Review clause

TITLE

TRADE RELATED ISSUES

III

SECTION A

COMMON PROVISIONS

Article 19

Border measures

Article 20

Agricultural policies

Article 21

Fiscal measures

Article 22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Article 23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24

Safeguard clause

Article 25

Transition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26

Safeguard procedures

Article 27

Exceptions

Article 28

Rules of origin

SECTION B

RIGHT OF ESTABLISHMENT AND SUPPLY OF SERVICES

Article 29

Reconfirmation of GATS obligations

Article 30

Further liberalisation of supply of services

Article 31

Maritime transport

SECTION C

CURRENT PAYMENTS AND MOVEMENT OF CAPITAL

Article 32

Current payments

Article 33

Capital movements

Article 34

Balance of payment difficulties

SECTION D

COMPETITION POLICY

Article 35

Definition

Article 36

Implementation

Article 37

Appropriate measures

Article 38

Comity

Article 39

Technical assistance

Article 40

Information

SECTION E

PUBLIC AID

Article 41

Public aid

Article 42

Remedial measures

Article 43

Transparency

Article 44

Review

SECTION F

OTHER TRADE-RELATED PROVISIONS

Article 45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46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47

Standardis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Article 48

Customs

Article 49

Statistics

TITLE
ECONOMIC COOPERATION IV
<i>Article 50</i>
Introduction
<i>Article 51</i>
Industry
<i>Article 52</i>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i>Article 53</i>
Trade development
<i>Article 54</i>
Micro-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Article 55</i>
Information societ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Article 56</i>
Postal cooperation
<i>Article 57</i>
Energy
<i>Article 58</i>
Mining and minerals
<i>Article 59</i>
Transport
<i>Article 60</i>
Tourism
<i>Article 61</i>
Agriculture
<i>Article 62</i>

Fisheries
<i>Article 63</i>
Services
<i>Article 64</i>
Consumer policy and protection of consumer health

TITLE
DEVELOPMENT COOPERATION

SECTION A

GENERAL

Article 65

Aims

Article 66

Priorities

Article 67

Eligible beneficiaries

Article 68

Means and methods

Article 69

Programming

Article 70

Project identification, preparation and appraisal

Article 71

Financing proposal and decision

Article 72

Financing agreements

SECTION B
IMPLEMENTATION

Article 73

Eligibility of contractors and supplies

Article 74

Contracting authority

Article 75

Procurement procedures

Article 76

General regulations and conditions

Article 77

Settlement of disputes

Article 78

Fiscal and customs arrangements

Article 79

Chief authorising officer

Article 80

National authorising officer and paying agent

Article 81

Head of Delegation

Article 82

Monitoring and evaluation

TITLE
COOPERATION IN OTHER AREAS

Article 83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4

Environment

Article 85

Culture

Article 86

Social issues

Article 87
Information

Article 88
Press and audiovisual media

Article 89
Human resources

Article 90
Fight against drugs and money laundering

Article 91
Data protection

Article 92
Health

TITLE

FINANCIAL ASPECTS OF COOPERATION

Article 93
Objective

Article 94
Grants

Article 95
Loans

Article 96
Regional cooperation

VII

TITLE

FINAL PROVISIONS

Article 97

Institutional set-up

Article 98
Tax carve-out clause

Article 99
Duration

Article 100
Non-discrimination

Article 101
Territorial application

Article 102
Future developments

Article 103
Review

Article 104
Dispute settlement

Article 105
Clause on bilateral agreements

Article 106
Amendment clause

Article 107
Annexes

Article 108
Languages and number of originals

Article 109
Entry into force

EU-칠레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PART
GENERAL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I
TITLE
NATURE AND SCOPE OF THE AGREEMENT

Article 1
Principles I

Article 2
Objectives and scope

TITLE
INSTITUTIONAL FRAMEWORK

Article 3
Association Council

Article 4 II
Composition and rules of procedures

Article 5
Decision-making powers

Article 6
Association Committee

Article 7
Special Committees

Article 8

Political Dialogue

Article 9
Association Parliamentary Committee

Article 10
Joint Consultative Committee

Article 11
Civil Society

PART
POLITICAL DIALOGUE

Article 12
Objectives II

Article 13
Mechanisms

Article 14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rticle 15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PART
COOPERATION

Article 16
General objectives

TITLE
ECONOMIC COOPERATION III

Article 17

Industrial cooperation

Article 18

Cooperation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ticle 19

Coopera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ticle 20

Cooperation on services

Article 21

Promoting investment

Article 22

Cooperation on energy

Article 23

Transport

Article 24

Cooperation o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25

Fisheries

Article 26

Customs cooperation

Article 27

Cooperation on statistics

Article 28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rticle 29

Consumer protection

Article 30

Data protection

Article 31

Macroeconomic dialogue

Article 3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33

Public procurement

Article 34

Cooperation on tourism

Article 35

Cooperation on mining

TITLE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Article 36

Cooper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7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II

TITLE

CULTURE, EDUCATION AND AUDIO-VISUAL

Article 38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39

Cooperation in the audio-visual field

Article 40

III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ultural cooperation

TITLE

PUBLIC ADMINISTRATION AND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IV

Article 41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42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TITLE

SOCIAL COOPERATION V

Article 43

Social dialogue

Article 44

Social cooperation

Article 45

Cooperation related to gender

TITLE

OTHER COOPERATION AREAS VI

Article 46

Cooperation on illegal immigration

Article 47

Cooperation on drugs and combating organised crime

TITLE

GENERAL PROVISIONS

Article 48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cooperation

Article 49

Regional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Article 50

Triangular and bi-regional cooperation

Article 51

Future developments clause

Article 52

Cooperation within the Association relationship

Article 53

Resources

Article 54

Specific tasks of the Association Committee in cooperation matters

PART

TRADE AND TRADE-RELATED MATTERS

TITLE

GENERAL PROVISIONS

Article 55

Objectives

Article 56

Customs unions and free trade areas

IV

I

TITLE
FREE MOVEMENT OF GOODS^{II}

Article 57
Objective

CHAPTE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I

Section 1
Common provisions

Article 58
Scope

Article 59
Customs duty

Article 60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rticle 61
Standstill

Article 62
Classification of goods

Article 63
Fees and other charges

Section 2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ubsection 2.1
Industrial products

Article 64
Scope

Article 65
Customs duties on industrial imports originating in Chile

Article 66
Customs duties on industrial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Subsection 2.2
Fish and fisheries products

Article 67
Scope

Article 68
Customs duties on fish and fisheries imports originating in Chile

Article 69
Customs duties on fish and fisheries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Subsection 2.3
Agricultural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70
Scope

Article 71
Customs duties on agricultural and processed agricultural imports originating in Chile

Article 72
Customs duties on agricultural and processed agricultural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Article 73
 Emergency clause for agricultural and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74
 Evolution clause

CHAPTER
 NON TARIFF MEASURES

II

Section 1
 Common provisions

Article 75
 Scope
Article 76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77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Section 2
 Antidumping and counter vailing measures

Article 7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ection 3
 Customs and related matters

Article 79
 Customs and related trade matters
Article 80

Customs valuation
Article 81
 Special Committee on Customs Cooperation and Rules of Origin
Article 82
 Enforcement of preferential treatment

Section 4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ticle 83

Objective

Article 84

Scope and coverage

Article 85

Definitions

Article 86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Article 87

Specific actions to be pursu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88

Committee on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Section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89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ection 6
Wines and Spirits

Article 90
Wines and spirits

CHAPTER
EXCEPTIONS

Article 91 III
General exception clause

Article 92
Safeguard clause

Article 93
Shortage clause

TITLE
TRADE IN SERVICES AND ESTABLISHMENT

Article 94
Objectives

CHAPTER III
SERVICE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95 I
Scope

Article 96

Definitions

Article 97
Market access

Article 98
National treatment

Article 99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Article 100
Review

Article 101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rticle 102
Domestic regulation

Article 103
Mutual recognition

Article 104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05
Transparency

Section 2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rticle 106
Scope

Article 107
Definitions

Article 108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Section 3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ticle 109

Definitions

Article 110

Regulatory authority

Article 111

Supply of services

Article 112

Major suppliers

Article 113

Interconnection

Article 114

Scarce resources

Article 115

Universal service

CHAPTER

FINANCIAL SERVICES

Article 116

Scope

Article 117

Definitions

Article 118

Market access

II

Article 119

National treatment

Article 120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Article 121

New financial services

Article 122

Data processing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rticle 123

Effective and transparent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rticle 124

Confidential information

Article 125

Prudential carve-out

Article 126

Recognition

Article 127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Article 128

Consultations

Article 129

Specific provisions on dispute settlement

CHAPTER

ESTABLISHMENT

Article 130

Scope

Article 131
 Definitions
Article 132
 National treatment
Article 133
 Right to regulate
Article 134
 Final provisions

CHAPTER
 EXCEPTIONS

Article 135
 Exceptions

IV

TITLE
 GOVERNMENT PROCUREMENT

Article 136
 Objective
Article 137
 Scope and coverage
Article 138
 Definitions
Article 139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 140
 Prohibition of offsets and national preferences
Article 141

IV

Valuation rules
Article 142
 Transparency
Article 143
 Tendering procedures
Article 144
 Selective tendering
Article 145
 Other procedures
Article 146
 Qualification of suppliers
Article 147
 Publication of notices
Article 148
 Tender documentation
Article 149
 Technical specifications
Article 150
 Time-limits
Article 151
 Negotiations
Article 152
 Submission,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rticle 153
 Awarding of contracts
Article 154
 Information on contract award

Article 155

Bid challenges

Article 156

Information technology

Article 157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ticle 158

Statistical reports

Article 159

Modifications to coverage

Article 160

Further negotiations

Article 161

Exceptions

Article 162

Review and implementation

TITLE

CURRENT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Article 163

Objective and scope

Article 164

Current Account

V

Article 165

Capital Account

Article 166

Exceptions and safeguard measures

Article 167

Final provisions

TIT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68

Objective

Article 169

Scope

Article 170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71

Review

TITLE

COMPETITION

Article 172

Objectives

Article 173

Definitions

Article 174

Notifications

Article 175

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Article 176

Consultations when the important interests of one Party are adversely affec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rticle 177

VI

VII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Article 178

Technical assistance

Article 179

Public enterprises and enterprises entrusted with special or exclusive rights, including designated monopolies

Article 180

Dispute settlement

TITLE
DISPUTE SETTLEMENT

CHAPTER VIII
OBJECTIVE AND SCOPE

Article 181

Objective

Article 182

Scope

CHAPTER I
DISPUTE AVOIDANCE

Article 183

Consultations

CHAPTER II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rticle 184

Initiation of the procedure

Article 185

Appointment of arbitrators

Article 186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Article 187

Arbitration panel ruling

Article 188

Compliance

CHAPTER IV
GENERAL PROVISIONS

Article 189

General provisions

IV

TITLE
TRANSPARENCY

Article 190

Contact point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rticle 191

Cooperation on increased transparency

IX

Article 192

Publication

TITLE
SPECIFIC TASKS IN TRADE MATTERS OF THE BODIES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93

Specific tasks

TITLE

EXCEPTIONS IN THE AREA OF TRADE

XI

Article 194

National security clause

Article 195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Article 196

Taxation

PART

FINAL PROVISIONS

Article 197

Definition of the Parties

Article 198

Entry into force

Article 199

Duration

Article 200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rticle 201

Future developments

Article 202

Data Protection

Article 203

National security clause

Article 204

Territorial Application

Article 205

Authentic Texts

Article 206

Annexes, Appendices, Protocols and Notes

V

EU-멕시코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TITLE	
	NATURE AND SCOPE	
<i>Article 1</i>		I
Basis of the Agreement		
<i>Article 2</i>		
Nature and scope		
	TITLE	
	POLITICAL DIALOGUE	
<i>Article 3</i>		
	TITLE	II
	TRADE	
<i>Article 4</i>		
Objective		
<i>Article 5</i>		III
Trade in goods		
<i>Article 6</i>		
Trade in services		
<i>Article 7</i>		
	TITLE	
	CAPITAL MOVEMENTS AND PAYMENTS	

<i>Article 8</i>	
Capital movements and payments	
<i>Article 9</i>	

	TITLE	
	PUBLIC PROCUREMENT,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TRADE-RELATED PROVISIONS	V
<i>Article 10</i>		
Public procurement		
<i>Article 11</i>		
Competition		
<i>Article 12</i>		
Intellectual,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TITLE	
	COOPERATION	
<i>Article 13</i>		
Dialogue on cooperation and economic matters		
<i>Article 14</i>		VI
Industrial cooperation		
<i>Article 15</i>		
Investment promotion		
<i>Article 16</i>		
Financial services		
<i>Article 17</i>		
Coopera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Article 18</i>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Article 19

Customs

Article 20

The information society

Article 21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the rural sector

Article 22

Cooperation on mining

Article 23

Cooperation on energy

Article 24

Cooperation on transport

Article 25

Cooperation on tourism

Article 26

Cooperation on statistics

Article 27

Government

Article 28

Cooperation on combating drug trafficking, moneylaundering and chemical precursors

Article 29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rticle 30

Cooperation on training and education

Article 31

Cultural cooperation

Article 32

Cooperation in the audiovisual sector

Article 33

Coopera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ticle 34

Cooperation on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rticle 35

Cooperation on fisheries

Article 36

Cooperation on social affairs and poverty

Article 37

Regional cooperation

Article 38

Cooperation on refugees

Article 39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ticle 40

Coope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Article 41

Cooperation on data protection

Article 42

Health

Article 43

Future developments clause

Article 44

Resources for cooperation

TITLE
INSTITUTIONAL FRAMEWORK^{VII}

- Article 45*
- Joint Council
- Article 47*
- Article 48*
- Joint Committee
- Article 49*
- Other special committees
- Article 50*
- Dispute settlement

TITLE
FINAL PROVISIONS

- Article 51*
- Data protection
- Article 52*
- National security clause
- Article 53*
- Article 54*
- Article 55*
- Definition of the Parties
- Article 56*
- Territorial application
- Article 57*
- Duration
- Article 58*

Fulfilment of obligations

- Article 59*
- Authentic text
- Article 60*
- Entry into force

VIII

EU-이스라엘 제휴협정 본문의 구성

Article 1-Article 2

TITLE
POLITICAL DIALOGUE

Article 3-Article 5

I

TITLE
FREE MOVEMENT OF GOODS

CHAPTER 1
BASIC PRINCIPLES

II

Article 6

CHAPTER 2
INDUSTRIAL PRODUCTS

Article 7-Article 9

CHAPTER 3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0-Article 15

CHAPTER 4
COMMON PROVISIONS

Article 16-Article 28

TITLE
RIGHT OF ESTABLISHMENT AND SUPPLY OF SERVICES

Article 29-Article 30

III

TITLE
CAPITAL MOVEMENTS, PAYMENTS, PUBLIC PROCUREMENT,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IV

CHAPTER 1
CAPITAL MOVEMENTS AND PAYMENTS

Article 31-Article 34

CHAPTER 2
PUBLIC PROCUREMENT

Article 35

CHAPTER 3
COMPETITION

Article 36-Article 38

CHAPTER 4
INTELLECTUAL,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Article 39

TITL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rticle 40

TITLE
ECONOMIC COOPERATION

Article 41 VI

Objectives

Article 42

Scope

Article 43

Methods and Modalities

Article 44

Regional cooperation

Article 45

Industrial cooperation

Article 46

Agriculture

Article 47

Standards

Article 48

Financial services

Article 49

Customs

Article 50

Environment

Article 51

Energy

Article 52

Information infrastructures and telecommunications

Article 54

Tourism

Article 55

Approximation of laws

Article 56

Drugs and money laundering

Article 57

Migration

TITLE
COOPERATION ON AUDIOVISUAL AND CULTURAL MATT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ticle 58-Article 62

TITLE
SOCIAL MATTERS

Article 63-Article 66

TITLE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67-Article 85

코토누 협정 본문의 구성

PART 1
GENERAL PROVISIONS

TITLE
OBJECTIVES, PRINCIPLES AND ACTORS

CHAPTER 1 I
OBJECTIVES AND PRINCIPLES

- Article 1*
Objectives of the partnership
- Article 2*
Fundamental principles
- Article 3*
Achievement of this Agreement's objectives

CHAPTER 2
THE ACTORS OF THE PARTNERSHIP

- Article 4*
General approach
- Article 5*
Information
- Article 6*
Definitions

- Article 7*
Capacity building

TITLE
THE POLITICAL DIMENSION

- Article 8* II
Political dialogue
- Article 9*
Essential Elements and Fundamental Element
- Article 10*
Other elements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 Article 11*
Peace-building policies,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Article 12*
Coherence of Community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 Article 13*
Migration

PART 2
INSTITUTIONAL PROVISIONS

- Article 14*
The joint institutions
- Article 15*
The Council of Ministers
- Article 16*
The Committee of Ambassadors

Article 17

The Joint Parliamentary Assembly

PART 3
COOPERATION STRATEGIES

Article 18

TITLE
DEVELOPMENT STRATEGIES

CHAPTER 1 I
GENERAL FRAMEWORK

Article 19

Principles and objectives

Article 20

The Approach

CHAPTER 2
AREAS OF SUPPORT
SECTION 1
ECONOMIC DEVELOPMENT

Article 21

Investment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Article 22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reforms and policies

Article 23

Economic sector development

Article 24

Tourism

SECTION 2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Article 25

Social sector development

Article 26

Youth issues

Article 27

Cultural development

SECTION 3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rticle 28

General approach

Article 29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rticle 30

Regional Cooperation

SECTION 4
THEMATIC AND CROSS-CUTTING ISSUES

Article 31

Gender issues

Article 32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rticle 33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TITL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CHAPTER 1
OBJECTIVES AND PRINCIPLES

Article 34
Objectives
Article 35
Principles

CHAPTER 2
NEW TRADING ARRANGEMENTS

Article 36
Modalities
Article 37
Procedures
Article 38
Joint Ministerial Trade Committee

CHAPTER 3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FORA

Article 39
General Provisions
Article 40
Commodities

CHAPTER 4

TRADE IN SERVICES

Article 41
General Provisions
Article 42
Maritime Transport
Article 4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Society

CHAPTER 5
TRADE-RELATED AREAS

Article 44
General Provisions
Article 45
Competition Policy
Article 46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47
Standardisation and Certification
Article 4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49
Trade and Environment
Article 50
Trade and Labour Standards
Article 51
Consumer Policy and Protection of Consumer Health
Article 52

Tax Carve-out Clause

CHAPTER 6

COOPERATION IN OTHER AREAS

Article 53

Fishery Agreements

Article 54

Food security

PART 4

DEVELOPMENT FINANCE COOPERATION

TITLE

GENERAL PROVISIONS

CHAPTER 1

OBJECTIVES, PRINCIPLES, GUIDELINES AND ELIGIBILITY

Article 55

Objectives

Article 56

Principles

Article 57

Guidelines

Article 58

Eligibility for financing

CHAPTER 2

SCOPE AND NATURE OF FINANCING

Article 59

Article 60

Scope of Financing

Article 61

Nature of Financing

TITLE

FINANCIAL COOPERATION

CHAPTER 1

FINANCIAL RESOURCES

II

Article 62

Overall amount

Article 63

Methods of financing

Article 64

On-lending operations

Article 65

Co-financing

CHAPTER 2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SUPPORT

Article 66

Support for debt relief

Article 67

Structural adjustment support

CHAPTER 3

SUPPORT IN CASES OF SHORT-TERM FLUCTUATIONS IN EXPORT EARNINGS

Article 68

CHAPTER 4

SUPPORT FOR SECTORAL POLICIES

Article 69

CHAPTER 5

MICROPROJECTS AND DECENTRALISED COOPERATION

Article 70

Article 71

CHAPTER 6

HUMANITARIAN AND EMERGENCY ASSISTANCE

Article 72

Article 73

CHAPTER 7

INVESTMENT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SUPPORT

Article 74

Article 75

Investment promotion

Article 76

Investment finance and support

Article 77

Investment guarantees

Article 78

Investment protection

TITLE

TECHNICAL COOPERATION

Article 79

Article 80

III

TITLE

PROCEDURES AND MANAGEMENT SYSTEMS

Article 81

Procedures

Article 82

Executing agents

Article 83

ACP-EC Development Finance Cooperation Committee

IV

PART 5

GENERAL PROVISIONS FOR THE LEAST-DEVELOPED, LANDLOCKED AND ISLAND ACP STATES (LDLIC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84

CHAPTER 2
LEAST-DEVELOPED ACP STATES

Article 85

Article 86

CHAPTER 3
LANDLOCKED ACP STATES

Article 87

Article 88

CHAPTER 4
ISLAND ACP STATES

Article 89

Article 90

PART 6
FINAL PROVISIONS

Article 91

Conflict between this Agreement and other treaties

Article 92

Scope of territorial application

Article 93

Ratification and entry into force

Article 94

Accession

Article 95

Duration of the agreement and revision clause

Article 96

Essential elements: consultation procedure and appropriate measures as regards human rights,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rule of law

Article 97

Consultation procedure and appropriate measures as regards corruption

Article 98

Dispute settlement

Article 99

Denunciation clause

Article 100

Status of the texts

관련 국내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등”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라 함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 3 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카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 임차 등 영농 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위 생산 유통 촉진 .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㉞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폐업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 시설원에 축산 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 또는 포획 채취 양식하는

②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 7 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 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①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①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③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폐업지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 징수에 필

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안) ^③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④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농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제원대책
3.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들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자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들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 사육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제징수 또는 지방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①

간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등)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무역조정(貿易調整)”이라 함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재취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무역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종합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 및 무역조정 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정한다.

제 5 조 ⑤(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 연구 등)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등)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은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

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 7 조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8 조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 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구입 자금
 2.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기준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② 무역조정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의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 회계 법률 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0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등)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

로자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의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무역조정기업

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 절차,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인력수요 직업 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③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 또는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4조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①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무역조정의 지원시책 관련 협조사항
4.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산업 또는 노동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학계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5조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및 조사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정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등) 산업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9조 (보고) 무역조정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종료^②

후 3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출입 검사 등)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②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 출입 검

사 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4조 (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20조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②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따른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③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 인하비율 수량 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은 협정관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6 조 (긴급관세조치)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과 제67조의 규정은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잠정긴급관세조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65조제4항·제7항 및 제6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세의 면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

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
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
킨 국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
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
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
2.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
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이하^③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
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
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
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
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③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
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
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
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
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④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⑤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⑥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계약상
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
출한 후 당해 물품의 원산지^⑦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계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

보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로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

니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수입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제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의 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5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에는 협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관장은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계약

상대국수출자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그 해제의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세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동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와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상호협력) 관세청장은 협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협정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관세상호협회의의 신청 등)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상호협회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관세상호협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회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재정경제부장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㉓ 다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㉔(비밀유지 의무) 세관공무원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법의 소추목적에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 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㉕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교부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세를 적용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면제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㉖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원 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세법』 제2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
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
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
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대한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정관세)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
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㉑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
도별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은 협정 부속서가 정하는 관세
의 철폐 인하비율 및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적용수량”이라 함은 협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을 말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수량의 결정과 관련한 주무부장관의 추천 및 적용
신청^㉒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정관세의 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이하 “기준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율중에서 관세법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2003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1. 관세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2.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동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
관세^㉓중 대통령이 정하는 양허관세의 세율을 제외한다)
3. 관세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은 협정관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 3 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 제57
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칠레를 원산지로서 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
할 우려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을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관세조
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①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
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
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
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율에 한한다)과 기준세율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긴급관세조치는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 및 그 내용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칠레정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4경 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

긴급관세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잠정긴급관세조치가 적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④

의한 관세액과 같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을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이 잠정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 (농산물에 대한 대항조치)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칠레정부가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이하 “칠레 정부의 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칠레정부와 당해 조치에 대한 칠레정부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에 따라 칠레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조치는 칠레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하며, 그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등) 칠레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 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한 후 2년의 범위안에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안에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칠레가 원산지로 되어 있는 물품은 담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③(원산지확인기준)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라 ①
 - 가.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의한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
 -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나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칠레로 하고,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방법 및 품목별확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9 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분실·도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과 이에 따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과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㉞) 경정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㉞)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협정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 서명(이하 “작성”이라 한다)된 것 (㉟)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이하 “원산지통보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것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의 휴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㊱) 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 등의 기재사항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수정통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가 착오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㊲)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㊳) 바에 따라 칠레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이하 “칠레세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칠레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나 관할 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㊴) 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의 오류사항과 이로 인한 부족세액 등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㊵) 부터 3월 (㊶) 에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부터 3월후 6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㊷) 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관련서류의 보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㊸) 부터 5년
2.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㊹) 부터 5년

3. 생산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제13조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 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원산지확인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칠레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칠레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 1. 수입자
- 2.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

을 요청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그 의사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 물품의 해당여부
-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3.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의 신청을 한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6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와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요청이나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이하 “원산지확인조사”라 한다)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 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심사를 요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조사결과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일한 물품 전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③

원산지 등을 결정하여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가 칠레세관의 사전심사 내용을 근거로 하였거나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칠레세관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또는 원산지결정의 관행을 기초로 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날 이전에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액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상호협력) 관세청장은 협정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시행과 통관절차의 표준화 및 조화를 위하여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의 내용 변경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칠레세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세관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①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의 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자.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수정통보를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한 자.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③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수정통보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20조 (양벌규정 등)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원 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오류내용을 세관장에게 수정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의 오류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조사와 처분) 제1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이 법과 관세법 및 협정과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 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 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정부의 시책 등)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

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 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 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협의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 6 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①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③로 본다.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④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⑤의 심의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

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②예방을 위한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9 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①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②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②하고 있는 인력 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 ① 1. 『국민연금법』
- 2. 『국민건강보험법』
- 3. 『고용보험법』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의료기관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에 출입 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③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④ 적용)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임금채권보장법』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조세 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

제 5 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

력이 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 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 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 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부 록]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